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 1단지 입주자모집공고(정정공고)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4.07.12.)의 내용 중 일부가 2024.07.22.일자로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1. (10~11페이지)101A, 101C, 151P타입 총78세대 공급금액 계의 단수정리로 인한 “부가세” 정정함.

| 타입 | 동(라인) | 공급면적 | py | 층 | 세대 수 | ◆ 부가세 변경 전 | | | |
|------|--------------------------------------|----------|---------|---------|------|-------------|---------------|-------------|---------------|
| | | | | | | 공급금액 | | | |
| | | | | |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세 | 계 |
| 101A | 106동 1,2호 | 138.7458 | 41.9706 | 3층~4층 | 4 | 328,891,892 | 496,623,734 | 49,662,373 | 875,178,000 |
| | | | | 16층~20층 | 10 | 345,159,523 | 521,187,707 | 52,118,771 | 918,466,000 |
| | | | | 21층~25층 | 10 | 347,281,665 | 524,392,122 | 52,439,212 | 924,113,000 |
| | | | | 26층 이상 | 13 | 348,342,549 | 525,994,047 | 52,599,405 | 926,936,000 |
| | 104동 2호, 107동 2호 109동 2호, 110동 2호 | | | 5층~6층 | 8 | 335,752,497 | 506,983,184 | 50,698,318 | 893,434,000 |
| | | | | 11층~15층 | 18 | 346,468,058 | 523,163,583 | 52,316,358 | 921,948,000 |
| | | | | 16층~20층 | 10 | 348,611,246 | 526,399,777 | 52,639,978 | 927,651,000 |
| 101C | 104동 1호, 107동 1호 109동1호,110동1호 | 140.4976 | 42.5005 | 2층 | 4 | 325,976,060 | 492,220,854 | 49,222,085 | 867,419,000 |
| 151P | 111동 1호 | 209.2292 | 63.2918 | 15층 | 1 | 725,297,006 | 1,095,191,812 | 109,519,181 | 1,930,008,000 |

| ◆ 부가세 변경 후 |
|-------------|
| 부가세 |
| 49,662,374 |
| 52,118,770 |
| 52,439,213 |
| 52,599,404 |
| 50,698,319 |
| 52,316,359 |
| 52,639,977 |
| 49,222,086 |
| 109,519,182 |

2. (40~41페이지) 시스템에어컨 전타입 “공급금액”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4.07.12.) 기준으로 정정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스템에어컨 공급금액

| 구분 | 주택형 (약식표기) | 설치위치 | 설치대수 (실내기)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비고 |
|-----------|---------------|--------------------------------|---------------|------------|-----------|------------|------------|----|
| | | | | | 계약시 | 2025.01.20 | 입주지정기간 | |
| 전실 일반형 | 84A | 거실, 주방, 침실1 | 3 | 5,800,000 | 580,000 | 580,000 | 4,640,000 | |
| |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 4 | 7,400,000 | 740,000 | 740,000 | 5,920,000 | |
| |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 5 | 9,560,000 | 956,000 | 956,000 | 7,648,000 | |
| | 84B | 거실, 주방, 침실1 | 3 | 5,800,000 | 580,000 | 580,000 | 4,640,000 | |
| |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 4 | 7,400,000 | 740,000 | 740,000 | 5,920,000 | |
| |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 5 | 9,560,000 | 956,000 | 956,000 | 7,648,000 | |
| | 101A | 거실, 주방, 침실1 | 3 | 5,800,000 | 580,000 | 580,000 | 4,640,000 | |
| |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 4 | 7,400,000 | 740,000 | 740,000 | 5,920,000 | |
| |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 5 | 9,560,000 | 956,000 | 956,000 | 7,648,000 | |
| | 101C | 거실, 주방, 침실1 | 3 | 5,800,000 | 580,000 | 580,000 | 4,640,000 | |
| |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 4 | 7,400,000 | 740,000 | 740,000 | 5,920,000 | |
| |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 5 | 9,560,000 | 956,000 | 956,000 | 7,648,000 | |
| | 151P | 거실, 주방, 가족실 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 | 7 | 16,500,000 | 1,650,000 | 1,650,000 | 13,200,000 | |
| | 170P | 거실, 주방, 가족실 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 | 7 | 16,500,000 | 1,650,000 | 1,650,000 | 13,200,000 | |
| 전실 고급형 | 84A | 거실, 주방, 침실1 | 3 | 6,650,000 | 665,000 | 665,000 | 5,320,000 | |
| |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 4 | 8,400,000 | 840,000 | 840,000 | 6,720,000 | |

| | | | | | | | |
|--|------|--------------------------------|---|------------|-----------|-----------|------------|
| | 84B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 5 | 10,810,000 | 1,081,000 | 1,081,000 | 8,648,000 |
| | | 거실, 주방, 침실1 | 3 | 6,650,000 | 665,000 | 665,000 | 5,320,000 |
| |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 4 | 8,400,000 | 840,000 | 840,000 | 6,720,000 |
| |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 5 | 10,810,000 | 1,081,000 | 1,081,000 | 8,648,000 |
| | 101A | 거실, 주방, 침실1 | 3 | 6,650,000 | 665,000 | 665,000 | 5,320,000 |
| |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 4 | 8,400,000 | 840,000 | 840,000 | 6,720,000 |
| |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 5 | 10,810,000 | 1,081,000 | 1,081,000 | 8,648,000 |
| | 101C | 거실, 주방, 침실1 | 3 | 6,650,000 | 665,000 | 665,000 | 5,320,000 |
| |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 4 | 8,400,000 | 840,000 | 840,000 | 6,720,000 |
| |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 5 | 10,810,000 | 1,081,000 | 1,081,000 | 8,648,000 |
| | 151P | 거실, 주방, 가족실 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 | 7 | 18,250,000 | 1,825,000 | 1,825,000 | 14,600,000 |
| | 170P | 거실, 주방, 가족실 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 | 7 | 18,250,000 | 1,825,000 | 1,825,000 | 14,600,000 |

3. (43페이지) 유상옵션 마감옵션 101A타입 “납부금액” 오기수정.

◆ 마감옵션 변경 전

| 복도 고급화 (거실아트월 선택시 선택 가능) | 품명 | 공급금액 | 계약시(10%) | 중도금(10%) | 잔금(80%) | 비고 | |
|--------------------------------|--------|-----------|-----------|----------|-----------|----------------------|----------------------|
| | 세라믹타일1 | | 7,840,000 | 784,000 | 784,000 | 6,272,000 | |
| | | 8,490,000 | 849,000 | 849,000 | 6,792,000 | 룸인룸 선택시 | |
| | | 5,950,000 | 595,000 | 595,000 | 4,760,000 | 와이드 다이닝 프리미엄 다이닝 선택시 | |
| 세라믹타일2 | | | 7,840,000 | 784,000 | 784,000 | 6,272,000 | |
| | | | 8,490,000 | 849,000 | 849,000 | 6,792,000 | 룸인룸 선택시 |
| | | | 5,950,000 | 595,000 | 595,000 | 4,760,000 | 와이드 다이닝 프리미엄 다이닝 선택시 |

◆ 마감옵션 변경 후

| 복도 고급화 (거실아트월 선택시 선택 가능) | 품명 | 공급금액 | 계약시 | 중도금(10%) | 잔금(80%) | 비고 | |
|--------------------------------|--------|-----------|-----------|----------|-----------|----------------------|----------------------|
| | 세라믹타일1 | | 7,840,000 | 784,000 | 784,000 | 6,272,000 | |
| | | 8,490,000 | 849,000 | 849,000 | 6,792,000 | 룸인룸 선택시 | |
| | | 5,950,000 | 595,000 | 595,000 | 4,760,000 | 와이드 다이닝 프리미엄 다이닝 선택시 | |
| 세라믹타일2 | | | 7,840,000 | 784,000 | 784,000 | 6,272,000 | |
| | | | 8,490,000 | 849,000 | 849,000 | 6,792,000 | 룸인룸 선택시 |
| | | | 5,950,000 | 595,000 | 595,000 | 4,760,000 | 와이드 다이닝 프리미엄 다이닝 선택시 |

4. (46~48페이지) 유상옵션 가구특화 해당타입(84A, 101A, 151P, 170P) 위치 “명칭” 정정함.

◆ 가구특화 변경 전

| 침실 | 침실2/3 | | 불박이장(1개소) |
|----|--|-----|-----------|
| | 택1 | 침실1 | 불박이장 고급화 |
| | | | 불박이장 |
| | 침실2-3 룸인룸(불박이장(파우더포함)+3연동 슬라이딩 도어 | | |
| | 침실1 : 와이드 드레스룸(벽판널형드레스룸+슬라이딩 도어) | | |
| 택1 | 와이드 다이닝(기존 알파룸 변경, 팬트리+장식장) | | |
| | 프리미엄 다이닝(기존 알파룸 변경, 대형아일랜드+홈바장+고급형 주방가구) | | |

◆ 가구특화 변경 후

| 침실 | 침실2/3 | | 불박이장(1개소) |
|-----|--|-----|-----------|
| | 택1 | 침실1 | 불박이장 고급화 |
| | | | 불박이장 |
| | 침실2-3 룸인룸(불박이장(파우더포함)+3연동 슬라이딩 도어 | | |
| | 침실1 : 와이드 드레스룸(벽판널형드레스룸+슬라이딩 도어) | | |
| 알파룸 | 와이드 다이닝(기존 알파룸 변경, 팬트리+장식장) | | |
| | 프리미엄 다이닝(기존 알파룸 변경, 대형아일랜드+홈바장+고급형 주방가구) | | |

※ 기존 침실로 표기 되어 있는 부분이 고객의 혼선을 가질 수 있어 알파룸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5. (48페이지) 유상옵션 조명특화 “공급금액”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4.07.12.) 기준으로 정정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조명특화 공급금액

| 구분 | 주택형 (약식표기) | 위치 | 품목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비고 |
|------|---------------|------|--|-----------|----------|------------|-----------|----|
| | | | | | 계약시 | 2025.01.20 | 입주지정기간 | |
| 조명특화 | 101A | 조명특화 | 안방특화조명+거실 리니어조명(우물천장) +주방특화조명+13인치월패드 | 5,170,000 | 517,000 | 517,000 | 4,136,000 | |
| | 101C | 조명특화 | 안방특화조명+거실 리니어조명(우물천장) +주방특화조명+13인치월패드 | 5,420,000 | 542,000 | 542,000 | 4,336,000 | |

※ 단지 주요정보

| 주택유형 | 해당지역 | 기타지역 | 규제지역여부 | | |
|-------|--|---|--------|------|--|
| 민영 | 대전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3.07.12. 이전부터 계속 거주) | 대전광역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거주자 | 비규제지역 | | |
| 재당첨제한 | 전매제한 | 거주의무기간 | 분양가상한제 | 택지유형 | |
| 없음 | 6개월 | 없음 | 미적용 | 민간택지 | |

| 구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 특별공급 접수일 |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 당첨자발표일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일정 | 2024.07.12.(금) | 2024.07.22.(월) | 2024.07.23.(화) | 2024.07.24.(수) | 2024.07.30.(화) | 2024.08.01.(목)~ 2024.08.10.(토) | 2024.08.12.(월)~ 2024.08.16.(금) |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에 주시기를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견본주택 및 상담전화(☎1551-5329)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화상담 시 주택공급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 및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 등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착오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신청 시 참고 자료로만 활용에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고 관련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주택(891세대)과 임대주택(233세대)을 동일한 단지 내에 혼합 건립(Social Mix)하였으며, 모든 동은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같은 동에 혼합 건립될 예정입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 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특별공급 | | | | | | 일반공급 | |
|------------|----------|------------------------|-------|------|-----------------------------|------|------|-----|
| | 철거주택 소유자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1순위 | 2순위 |
| 청약통장 자격요건 | - |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 | 1순위(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 가입 | |
| 세대주 요건 | - | - | - | - | 필요 | - | - |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 - | - | 적용 | - | 적용 | - | - |

- ※ 단, 철거주택 소유자 및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민은 청약통장 불필요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오피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유형 | 당첨자 선정 | 예비입주자 선정 | 동호수 결정 |
|------|------------------|--|----------------------------------|
| 특별공급 |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
| 일반공급 |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점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https://hillstate.co.kr/s/doan_riverpark)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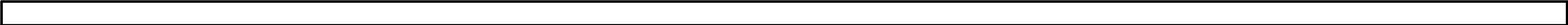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 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여부에 따라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유형 |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 네이버인증서 | KB국민인증서 | 토스인증서 | 신한인증서 |
|--|-------|-------|--------|---------|-------|-------|
|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 | ○ | |
| APT무순위 / 임의공급 /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 | ○ | | | X |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II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7.12.(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대전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가(2023.07.12.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구 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1순위 | 일반공급 2순위 | 당첨자발표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일 정 | 2024.07.22.(월) | 2024.07.23.(화) | 2024.07.24.(수) | 2024.07.30.(화) | 2024.08.01.(목)~ 2024.08.10.(토) | 2024.08.12.(월)~ 2024.08.16.(금) |
| 방 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 (주소: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1557번지) | | |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63조 및 동법 제63조의2에 의한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해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아래와 같이 전매행위가 제한되며(법령에 따른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상속 등 제외)해당 사항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 전매제한기간 | 6개월 | 6개월 |

Ⅲ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과 - 20108호(2024.07.11.)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동 도안2-2지구 SA5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34층 11개동 총 1,124세대 중 일반분양 89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393세대(철거주택 16세대, 기관추천 90세대, 다자녀가구 87세대, 신혼부부 118세대, 노부모부양 24세대, 생애최초 58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7년 0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예정)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 주택 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약식표기 | 주택공급면적(m ²) | |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 계약 면적 | 세대별 대지비분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 | | | | 일반공급 세대수 |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 |
|------------|----|-----------------|------|-------------------------|------------|----------|----------------------------|----------|-------------|------------|----------|-----------|----------|-----------|----------|----------|-------------|--------------------|----|
| | |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소계 | | | | | 기관 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 부부 | 노부모 부양 | 생애 최초 | 철거 주택 | | | 계 |
| 2024000346 | 01 | 084.9923A | 84A | 84.9923 | 31.4143 | 116.4066 | 61.5781 | 177.9847 | 53.7971 | 433 | 55 | 43 | 77 | 12 | 38 | 16 | 241 | 192 | 17 |
| | 02 | 084.9364B | 84B | 84.9364 | 31.7883 | 116.7247 | 61.5377 | 178.2624 | 53.7618 | 231 | 35 | 23 | 41 | 6 | 20 | - | 125 | 106 | 8 |
| | 03 | 101.9822A | 101A | 101.9822 | 36.7636 | 138.7458 | 73.8877 | 212.6335 | 64.5511 | 139 | - | 13 | - | 4 | - | - | 17 | 122 | 6 |
| | 04 | 101.9524C | 101C | 101.9524 | 38.5452 | 140.4976 | 73.8661 | 214.3637 | 64.5323 | 84 | - | 8 | - | 2 | - | - | 10 | 74 | 4 |
| | 05 | 151.1805P | 151P | 151.1805 | 58.0487 | 209.2292 | 109.5326 | 318.7618 | 95.6924 | 1 | - | - | - | - | - | - | 0 | 1 | - |
| | 06 | 170.1077P | 170P | 170.1077 | 63.6637 | 233.7714 | 123.2456 | 357.0170 | 107.6732 | 3 | - | - | - | - | - | - | 0 | 3 | - |
| 합 계 | | | | | | | | | | 891 | 90 | 87 | 118 | 24 | 58 | 16 | 393 | 498 | 35 |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상기 세대 타입별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세대벽체면적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생활지원센터,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기되므로 면적 계산상 단수조정으로 인하여 각 세대별 계약 면적은 전체 총 연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오차 조정에 따른 단수 조정으로 등 기면적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에서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세대별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 대지비분은 단수조정 및 공부정리 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에서 증감될 수 있고,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별도 정산하지 않

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타입별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사업계획변경,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경우에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에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상호간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고,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건물의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에 증감이 있을 경우 분양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의 증감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 홈페이지는 타입(약식표기)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세대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아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 | | | | | | |
|------|-----------|-----------|-----------|-----------|-----------|-----------|
| 주택형 | 084.9923A | 084.9364B | 101.9822A | 101.9524C | 151.1805P | 170.1077P |
| 약식표기 | 84A | 84B | 101A | 101C | 151P | 170P |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 약식 표기 | 동(라인) | 세대수 | 층 구분 | 해당 세대수 | 공급금액 | | | | 계약금(10%) | | 중도금(60%) | | | | | | 잔금(30%) | |
|-------|---|--------------------|-------------|-------------|-------------|-------------|-------------|-------------|-------------|-------------|------------|------------|------------|------------|------------|-------------|-------------|-------------|
| | | | |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세 | 계 | 계약시 | 계약 후 1개월 이내 | 1회(10%) | 2회(10%) | 3회(10%) | 4회(10%) | 5회(10%) | 6회(10%) | 입주 지정기간 | |
| | | | | | | | | | | | 2024.12.20 | 2025.05.20 | 2025.10.20 | 2026.03.20 | 2026.08.20 | 2027.01.20 | | |
| 84A | 101동 1,3,4호 105동 1,3,4호 108동 1,3,4호 | 199 | 2층 | 4 | 272,069,343 | 411,865,657 | | 683,935,000 | 20,000,000 | 48,393,500 | 68,393,500 | 68,393,500 | 68,393,500 | 68,393,500 | 68,393,500 | 68,393,500 | 205,180,500 | |
| | | | 3층~4층 | 14 | 278,048,675 | 420,917,325 | | 698,966,000 | 20,000,000 | 49,896,600 | 69,896,600 | 69,896,600 | 69,896,600 | 69,896,600 | 69,896,600 | 69,896,600 | 69,896,600 | 209,689,800 |
| | | | 5층~6층 | 17 | 281,038,540 | 425,443,460 | | 706,482,000 | 20,000,000 | 50,648,200 | 70,648,200 | 70,648,200 | 70,648,200 | 70,648,200 | 70,648,200 | 70,648,200 | 70,648,200 | 211,944,600 |
| | | | 7층~8층 | 14 | 284,028,404 | 429,969,596 | | 713,998,000 | 20,000,000 | 51,399,800 | 71,399,800 | 71,399,800 | 71,399,800 | 71,399,800 | 71,399,800 | 71,399,800 | 71,399,800 | 214,199,400 |
| | | | 9층~10층 | 14 | 287,017,871 | 434,495,129 | | 721,513,000 | 20,000,000 | 52,151,300 | 72,151,300 | 72,151,300 | 72,151,300 | 72,151,300 | 72,151,300 | 72,151,300 | 72,151,300 | 216,453,900 |
| | | | 11층~15층 | 31 | 290,007,736 | 439,021,264 | | 729,029,000 | 20,000,000 | 52,902,900 | 72,902,900 | 72,902,900 | 72,902,900 | 72,902,900 | 72,902,900 | 72,902,900 | 72,902,900 | 218,708,700 |
| | | | 16층~20층 | 34 | 291,801,814 | 441,737,186 | | 733,539,000 | 20,000,000 | 53,353,900 | 73,353,900 | 73,353,900 | 73,353,900 | 73,353,900 | 73,353,900 | 73,353,900 | 73,353,900 | 220,061,700 |
| | | | 21층~25층 | 36 | 293,595,494 | 444,452,506 | | 738,048,000 | 20,000,000 | 53,804,800 | 73,804,800 | 73,804,800 | 73,804,800 | 73,804,800 | 73,804,800 | 73,804,800 | 73,804,800 | 221,414,400 |
| | 26층 이상 | 35 | 294,492,533 | 445,810,467 | | 740,303,000 | 20,000,000 | 54,030,300 | 74,030,300 | 74,030,300 | 74,030,300 | 74,030,300 | 74,030,300 | 74,030,300 | 74,030,300 | 222,090,900 | | |
| | 102동 1, 3호 103동 1, 3호 106동 4호 104동 4호 107동 4호 109동 4호 110동 4호 111동 1, 3호 | 234 | 1층 | 3 | 264,851,262 | 400,938,738 | | 665,790,000 | 20,000,000 | 46,579,000 | 66,579,000 | 66,579,000 | 66,579,000 | 66,579,000 | 66,579,000 | 66,579,000 | 199,737,000 | |
| | | | 2층 | 3 | 274,817,345 | 416,025,655 | | 690,843,000 | 20,000,000 | 49,084,300 | 69,084,300 | 69,084,300 | 69,084,300 | 69,084,300 | 69,084,300 | 69,084,300 | 69,084,300 | 207,252,900 |
| | | | 3층~4층 | 17 | 280,857,143 | 425,168,857 | | 706,026,000 | 20,000,000 | 50,602,600 | 70,602,600 | 70,602,600 | 70,602,600 | 70,602,600 | 70,602,600 | 70,602,600 | 70,602,600 | 211,807,800 |
| | | | 5층~6층 | 18 | 283,877,240 | 429,740,760 | | 713,618,000 | 20,000,000 | 51,361,800 | 71,361,800 | 71,361,800 | 71,361,800 | 71,361,800 | 71,361,800 | 71,361,800 | 71,361,800 | 214,085,400 |
| | | | 7층~8층 | 18 | 286,897,338 | 434,312,662 | | 721,210,000 | 20,000,000 | 52,121,000 | 72,121,000 | 72,121,000 | 72,121,000 | 72,121,000 | 72,121,000 | 72,121,000 | 72,121,000 | 216,363,000 |
| | | | 9층~10층 | 20 | 289,917,038 | 438,883,962 | | 728,801,000 | 20,000,000 | 52,880,100 | 72,880,100 | 72,880,100 | 72,880,100 | 72,880,100 | 72,880,100 | 72,880,100 | 72,880,100 | 218,640,300 |
| | | | 11층~15층 | 40 | 292,937,135 | 443,455,865 | | 736,393,000 | 20,000,000 | 53,639,300 | 73,639,300 | 73,639,300 | 73,639,300 | 73,639,300 | 73,639,300 | 73,639,300 | 73,639,300 | 220,917,900 |
| | | | 16층~20층 | 33 | 294,749,114 | 446,198,886 | | 740,948,000 | 20,000,000 | 54,094,800 | 74,094,800 | 74,094,800 | 74,094,800 | 74,094,800 | 74,094,800 | 74,094,800 | 74,094,800 | 222,284,400 |
| | | | 21층~25층 | 35 | 296,561,093 | 448,941,907 | | 745,503,000 | 20,000,000 | 54,550,300 | 74,550,300 | 74,550,300 | 74,550,300 | 74,550,300 | 74,550,300 | 74,550,300 | 74,550,300 | 223,650,900 |
| | | | 26층 이상 | 47 | 297,467,282 | 450,313,718 | | 747,781,000 | 20,000,000 | 54,778,100 | 74,778,100 | 74,778,100 | 74,778,100 | 74,778,100 | 74,778,100 | 74,778,100 | 74,778,100 | 224,334,300 |
| | 84B | 101동 2호 108동 2호 | 52 | 1층 | 1 | 260,290,087 | 394,033,913 | | 654,324,000 | 20,000,000 | 45,432,400 | 65,432,400 | 65,432,400 | 65,432,400 | 65,432,400 | 65,432,400 | 196,297,200 | |
| | | | | 2층 | 2 | 270,084,321 | 408,860,679 | | 678,945,000 | 20,000,000 | 47,894,500 | 67,894,500 | 67,894,500 | 67,894,500 | 67,894,500 | 67,894,500 | 67,894,500 | 203,683,500 |

| | | | | | | | | | | | | | | | | | | |
|--------|--|-------------|-------------|-------------|-------------|---------------|-------------|---------------|-------------|-------------|-------------|-------------|-------------|-------------|-------------|-------------|-------------|-------------|
| | | | 11층~15층 | 10 | 343,037,756 | 517,983,858 | 51,798,386 | 912,820,000 | 20,000,000 | 71,282,000 | 91,282,000 | 91,282,000 | 91,282,000 | 91,282,000 | 91,282,000 | 273,846,000 | | |
| | | | 16층~20층 | 10 | 345,159,523 | 521,187,707 | 52,118,770 | 918,466,000 | 20,000,000 | 71,846,600 | 91,846,600 | 91,846,600 | 91,846,600 | 91,846,600 | 91,846,600 | 91,846,600 | 275,539,800 | |
| | | | 21층~25층 | 10 | 347,281,665 | 524,392,122 | 52,439,213 | 924,113,000 | 20,000,000 | 72,411,300 | 92,411,300 | 92,411,300 | 92,411,300 | 92,411,300 | 92,411,300 | 92,411,300 | 277,233,900 | |
| | | | 26층 이상 | 13 | 348,342,549 | 525,994,047 | 52,599,404 | 926,936,000 | 20,000,000 | 72,693,600 | 92,693,600 | 92,693,600 | 92,693,600 | 92,693,600 | 92,693,600 | 92,693,600 | 278,080,800 | |
| | 104동 2호 107동 2호 109동 2호 110동 2호 | 78 | | 2층 | 1 | 325,037,312 | 490,803,353 | 49,080,335 | 864,921,000 | 20,000,000 | 66,492,100 | 86,492,100 | 86,492,100 | 86,492,100 | 86,492,100 | 86,492,100 | 259,476,300 | |
| | | | | 3층~4층 | 8 | 332,180,894 | 501,590,096 | 50,159,010 | 883,930,000 | 20,000,000 | 68,393,000 | 88,393,000 | 88,393,000 | 88,393,000 | 88,393,000 | 88,393,000 | 265,179,000 | |
| | | | | 5층~6층 | 8 | 335,752,497 | 506,983,184 | 50,698,319 | 893,434,000 | 20,000,000 | 69,343,400 | 89,343,400 | 89,343,400 | 89,343,400 | 89,343,400 | 89,343,400 | 268,030,200 | |
| | | | | 7층~8층 | 8 | 339,324,476 | 512,376,840 | 51,237,684 | 902,939,000 | 20,000,000 | 70,293,900 | 90,293,900 | 90,293,900 | 90,293,900 | 90,293,900 | 90,293,900 | 270,881,700 | |
| | | | | 9층~10층 | 8 | 342,896,455 | 517,770,495 | 51,777,050 | 912,444,000 | 20,000,000 | 71,244,400 | 91,244,400 | 91,244,400 | 91,244,400 | 91,244,400 | 91,244,400 | 273,733,200 | |
| | | | | 11층~15층 | 18 | 346,468,058 | 523,163,583 | 52,316,359 | 921,948,000 | 20,000,000 | 72,194,800 | 92,194,800 | 92,194,800 | 92,194,800 | 92,194,800 | 92,194,800 | 92,194,800 | 276,584,400 |
| | | | | 16층~20층 | 10 | 348,611,246 | 526,399,777 | 52,639,977 | 927,651,000 | 20,000,000 | 72,765,100 | 92,765,100 | 92,765,100 | 92,765,100 | 92,765,100 | 92,765,100 | 92,765,100 | 278,295,300 |
| | | | | 21층~25층 | 10 | 350,754,433 | 529,635,970 | 52,963,597 | 933,354,000 | 20,000,000 | 73,335,400 | 93,335,400 | 93,335,400 | 93,335,400 | 93,335,400 | 93,335,400 | 93,335,400 | 280,006,200 |
| | 26층 이상 | 7 | 351,825,839 | 531,253,783 | 53,125,378 | 936,205,000 | 20,000,000 | 73,620,500 | 93,620,500 | 93,620,500 | 93,620,500 | 93,620,500 | 93,620,500 | 93,620,500 | 280,861,500 | | | |
| 101C | 104동 1호 107동 1호 109동 1호 110동 1호 | 84 | 1층 | 3 | 314,155,271 | 474,371,572 | 47,437,157 | 835,964,000 | 20,000,000 | 63,596,400 | 83,596,400 | 83,596,400 | 83,596,400 | 83,596,400 | 83,596,400 | 250,789,200 | | |
| | | | 2층 | 4 | 325,976,060 | 492,220,854 | 49,222,086 | 867,419,000 | 20,000,000 | 66,741,900 | 86,741,900 | 86,741,900 | 86,741,900 | 86,741,900 | 86,741,900 | 260,225,700 | | |
| | | | 3층~4층 | 8 | 333,140,687 | 503,039,375 | 50,303,938 | 886,484,000 | 20,000,000 | 68,648,400 | 88,648,400 | 88,648,400 | 88,648,400 | 88,648,400 | 88,648,400 | 265,945,200 | | |
| | | | 5층~6층 | 8 | 336,722,813 | 508,448,352 | 50,844,835 | 896,016,000 | 20,000,000 | 69,601,600 | 89,601,600 | 89,601,600 | 89,601,600 | 89,601,600 | 89,601,600 | 268,804,800 | | |
| | | | 7층~8층 | 8 | 340,304,938 | 513,857,329 | 51,385,733 | 905,548,000 | 20,000,000 | 70,554,800 | 90,554,800 | 90,554,800 | 90,554,800 | 90,554,800 | 90,554,800 | 271,664,400 | | |
| | | | 9층~10층 | 8 | 343,887,064 | 519,266,305 | 51,926,631 | 915,080,000 | 20,000,000 | 71,508,000 | 91,508,000 | 91,508,000 | 91,508,000 | 91,508,000 | 91,508,000 | 274,524,000 | | |
| | | | 11층~15층 | 18 | 347,469,190 | 524,675,282 | 52,467,528 | 924,612,000 | 20,000,000 | 72,461,200 | 92,461,200 | 92,461,200 | 92,461,200 | 92,461,200 | 92,461,200 | 92,461,200 | 277,383,600 | |
| | | | 16층~20층 | 10 | 349,618,390 | 527,920,555 | 52,792,055 | 930,331,000 | 20,000,000 | 73,033,100 | 93,033,100 | 93,033,100 | 93,033,100 | 93,033,100 | 93,033,100 | 93,033,100 | 279,099,300 | |
| | | | 21층~25층 | 10 | 351,767,590 | 531,165,827 | 53,116,583 | 936,050,000 | 20,000,000 | 73,605,000 | 93,605,000 | 93,605,000 | 93,605,000 | 93,605,000 | 93,605,000 | 93,605,000 | 280,815,000 | |
| 26층 이상 | 7 | 352,842,378 | 532,788,747 | 53,278,875 | 938,910,000 | 20,000,000 | 73,891,000 | 93,891,000 | 93,891,000 | 93,891,000 | 93,891,000 | 93,891,000 | 93,891,000 | 281,673,000 | | | | |
| 151P | 111동 1호 | 1 | 15층 | 1 | 725,297,006 | 1,095,191,812 | 109,519,182 | 1,930,008,000 | 50,000,000 | 143,000,800 | 193,000,800 | 193,000,800 | 193,000,800 | 193,000,800 | 193,000,800 | 579,002,400 | | |
| 170P | 109동 1호 110동 1호 | 2 | 15층 | 2 | 836,971,238 | 1,263,818,875 | 126,381,887 | 2,227,172,000 | 50,000,000 | 172,717,200 | 222,717,200 | 222,717,200 | 222,717,200 | 222,717,200 | 222,717,200 | 668,151,600 | | |
| | 107동 1호 | 1 | 29층 | 1 | 836,971,238 | 1,263,818,875 | 126,381,887 | 2,227,172,000 | 50,000,000 | 172,717,200 | 222,717,200 | 222,717,200 | 222,717,200 | 222,717,200 | 222,717,200 | 668,151,600 | | |

■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상기 공급금액은 사업주체의 자체 심의 결과 타입별, 동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인지세, 취득세,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인지세는 시행위탁사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 납부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 및 추가선택품목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입니다. 또한 추가선택품목은 분양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 계약시 또는 이후 별도의 계약 일정을 통해 선택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타입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준공인가일 이후에 받으며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공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공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 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요일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연체료 납부시 토요일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정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IV 특별공급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 구 분(약식표기) | | 84A | 84B | 101A | 101C | 151P | 170P | 합 계 | |
|--------------------|---------------|------------|------------|-----------|-----------|----------|----------|------------|----|
| 기관추천 특별공급 | 장애인 | 대전광역시 | 8 | 5 | - | - | - | - | 13 |
| | | 충청남도 | 4 | 3 | - | - | - | - | 7 |
| | | 세종특별자치시 | 4 | 2 | - | - | - | - | 6 |
| | 국가유공자 | | 2 | 3 | - | - | - | - | 5 |
| | 장기복무 제대군인 | | 2 | 3 | - | - | - | - | 5 |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 2 | 3 | - | - | - | - | 5 |
| | 중소기업 근로자 | | 4 | 4 | - | - | - | - | 8 |
| | 철거민 | 도안대로 | 3 | - | - | - | - | - | 3 |
| | | 이주자주택 | 3 | - | - | - | - | - | 3 |
| | 시책추진 | | 23 | 12 | - | - | - | - | 35 |
| 기관추천 특별공급 계 | | 55 | 35 | 0 | 0 | 0 | 0 | 90 | |
| 철거주택 소유자 특별공급 | | 16 | - | - | - | - | - | 16 |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43 | 23 | 13 | 8 | - | - | 87 |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77 | 41 | - | - | - | - | 118 |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12 | 6 | 4 | 2 | - | - | 24 |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38 | 20 | - | - | - | - | 58 | |
| 합 계 | | 241 | 125 | 17 | 10 | 0 | 0 | 393 |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공급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 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 | 구분 | 처리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 | | | | | | | | | | | | | | | | | | |
|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 | | | | | | | | | | | | | | | | | | | |
| |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 모두 부적격 처리 | | | | | | | | | | | | | | | | | | | | |
|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p> | | | | | | | | | | | | | | | | | | | | | | |
| 무주택 요건 |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p> <p>- 철거주택 소유자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p> <p>-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p> | | | | | | | | | | | | | | | | | | | | | |
| 청약통장 자격요건 |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민은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p> <p>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합니다.)</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p> <p>-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p> <p>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합니다.)</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p>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p>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합니다.</p> | | 구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구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 | | | | | | | | | | | | | | | | |

IV-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5% 범위 : 90세대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p> <p>■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철거주택 소유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민은 청약통장 불필요)</p> <p>■ 철거민의 경우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 한한다.</p> |
| 추천기관 | <p>■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p> <p>■ 장애인 : 대전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세종특별자치시청 노인장애인과, 충청남도청 장애인복지과</p>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 대전지방보훈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 시책추진 해당자 : 대전광역시청 주택정책과 ■ 철거민 : 대전광역시 도시정비과(이주자주택의 경우 사업위탁사) |
| 당첨자 선정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이주자주택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이주자주택 제외)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IV-2 **철거주택 소유자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4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 16세대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당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당해 사업 이주대책의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거나 이주정착금을 받은 자는 제외) ■ 사업위탁사로부터 철거주택 소유자 특별공급 대상으로 확정받은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특별공급 횟수 제한)에 따라 기존에 특별공급을 받은 자는 제외) |
| 당첨자 선정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의거하여 개발면적이 33만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조성한 토지에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게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합니다.(철거주택 소유자 청약통장 불필요) ■ 사업위탁사가 선정하여 통보한 철거주택 소유자 특별공급 확정대상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철거주택 소유자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p>※ 청약신청은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와 동일하게 진행합니다.</p> <p>- 경로 : 청약홈 > 청약신청 > APT 특별공급 > 주택명 선택 > "기관추천 특별공급" 선택하여 청약</p> |

IV-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87세대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합니다.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 당첨자 선정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대전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대전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거주자) ■ ②배점 |

| 배점항목 | 총배점 | 배점기준 | | 비고 |
|---|-----|----------------|----|---|
| | | 기준 | 점수 | |
| 계 | 100 | | | |
| 미성년 자녀수(1) | 40 | 4명 이상 | 40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
| | | 3명 | 35 | |
| | | 2명 | 25 | |
| 영유아 자녀수(2) | 15 | 3명 이상 | 15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
| | | 2명 | 10 | |
| | | 1명 | 5 | |
| 세대구성(3) | 5 | 3세대 이상 | 5 |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 이 경과된 분 |
| | | 한부모 가족 | 5 | |
| 무주택기간(4) | 20 | 10년 이상 | 20 |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 15 | 10년 이상 | 15 |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대전광역시에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
|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 5 | 10년 이상 | 5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 <p>※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p> <p>(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p> <p>(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p> | | | | |

IV-4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118세대

| 구분 | 내용 |
|----|----|
|----|----|

| 대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합니다.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첨자 선정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table border="1" data-bbox="241 475 2123 949"> <thead> <tr> <th>단계</th> <th>소득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신생아 우선공급 (1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합니다.)</td> </tr> <tr> <td>2단계</td> <td>신생아 일반공급 (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합니다.)</td> </tr> <tr> <td>3단계</td> <td>우선공급 (3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합니다.)</td> </tr> <tr> <td>4단계</td> <td>일반공급 (1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합니다.)</td> </tr> <tr> <td>5단계</td> <td>추첨공급</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됩니다.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대전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table border="1" data-bbox="241 1129 2123 1321"> <thead> <tr> <th>순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순위</td> <td>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td> </tr> <tr> <td>2순위</td> <td>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대전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대전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거주자) | 단계 | 소득구분 | 내용 | 1단계 | 신생아 우선공급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합니다.) | 2단계 | 신생아 일반공급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합니다.) | 3단계 | 우선공급 (3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합니다.) | 4단계 | 일반공급 (1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합니다.) | 5단계 | 추첨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순위 | 내용 | 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 2순위 |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
| 단계 | 소득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1단계 | 신생아 우선공급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2단계 | 신생아 일반공급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3단계 | 우선공급 (3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4단계 | 일반공급 (1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5단계 | 추첨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순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2순위 |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합니다.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합니다.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합니다.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확인 시점

| 입주자모집공고일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
|-------------|------------------|-----------------------|
| 2024.07.12.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 소득구분 | | 비율 | 소득금액 | | | | | |
|------------------|------------------------|------------------------|----------------------------|----------------------------|-----------------------------|-----------------------------|-----------------------------|-----------------------------|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이하 | ~7,004,509원 | ~8,248,467원 | ~8,775,071원 | ~9,563,282원 | ~10,351,493원 | ~11,139,704원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120% 이하 | ~8,405,411원 | ~9,898,160원 | ~10,530,085원 | ~11,475,938원 | ~12,421,792원 | ~13,367,645원 |
|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140% 이하 | 7,004,510원~ 9,806,313원 | 8,248,468원~ 11,547,854원 | 8,775,072원~ 12,285,099원 | 9,563,283원~ 13,388,595원 | 10,351,494원~ 14,492,090원 | 11,139,705원~ 15,595,586원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초과 160% 이하 | 8,405,412원~ 11,207,214원 | 9,898,161원~ 13,197,547원 | 10,530,086원~ 14,040,114원 | 11,475,939원~ 15,301,251원 | 12,421,793원~ 16,562,389원 | 13,367,646원~ 17,823,526원 |
| 추첨공급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9,806,314원~ | 11,547,855원~ | 12,285,100원~ | 13,388,596원~ | 14,492,091원~ | 15,595,587원~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1,207,215원~ | 13,197,548원~ | 14,040,115원~ | 15,301,252원~ | 16,562,390원~ | 17,823,527원~ |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합니다.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 구분 | 금액 | 내용 | | | | | | | | | | | | |
|----------------|---|----------------------------------|---|------------|--|------------|----|--------------------|---------------|------|----------------------------------|------|--|-----------------|
| 부동산 (건물+토지) | 3억3,100만원 이하 | 건축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주택 외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 | | | | | | | | |
| 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 | | | | | | | | | | |
|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 | | | | | | | | | | |
| 주택 외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 | | | | | | | |
| 토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중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합니다.(개별공시지가 기준) | | | | | | | | | | | | | |

IV-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24세대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 당첨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대전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대전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거주자)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 ②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 | | 1명 | 10 | 5명 | 30 |
|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 | 3명 | 20 |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 |
|-----------|--|
| 비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IV-6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공공택지는 19%) 범위 : 58세대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대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본 주택은 60㎡ 이하 주택형이 없으므로, 1인 가구 중 단독세대인 분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 | | | | | | | | | | | |
| 당첨자 선정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e0e0e0;"> <th style="width: 10%;">단계</th> <th style="width: 15%;">소득구분</th> <th style="width: 75%;">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단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신생아 우선공급 (1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단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신생아 일반공급 (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단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우선공급 (3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 </tr> </tbody> </table> | | 단계 | 소득구분 | 내용 | 1단계 | 신생아 우선공급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 2단계 | 신생아 일반공급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 3단계 | 우선공급 (3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
| 단계 | 소득구분 | 내용 | | | | | | | | | | | | |
| 1단계 | 신생아 우선공급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 | | | | | | | | | | | |
| 2단계 | 신생아 일반공급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 | | | | | | | | | | | |
| 3단계 | 우선공급 (3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 | | | | | | | | | | | |

| | | | |
|-----|---------------|--|---|
| 4단계 | 일반공급 (1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 |
| 5단계 | 추첨공급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 | 1인 가구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대전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대전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거주자)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 | | |
|-------------|------------------|-----------------------|
| 입주자모집공고일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
| 2024.07.12.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비고

| 소득구분 | 비율 | 소득금액 | | | | | | |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 130% 이하 | ~9,105,862원 | ~10,723,007원 | ~11,407,592원 | ~12,432,267원 | ~13,456,941원 | ~14,481,615원 | |
|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 130% 초과 160% 이하 | 9,105,863원~ 11,207,214원 | 10,723,008원~ 13,197,547원 | 11,407,593원~ 14,040,114원 | 12,432,268원~ 15,301,251원 | 13,456,942원~ 16,562,389원 | 14,481,616원~ 17,823,526원 | |
| 추첨공급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1,207,215원~ | 13,197,548원~ | 14,040,115원~ | 15,301,252원~ | 16,562,390원~ | 17,823,527원~ |
| | 1인 가구 | 160% 이하 | ~11,207,214원 | ~13,197,547원 | ~14,040,114원 | ~15,301,251원 | ~16,562,389원 | ~17,823,526원 |
| |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1,207,215원~ | 13,197,548원~ | 14,040,115원~ | 15,301,252원~ | 16,562,390원~ | 17,823,527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 구분 | 금액 | 내용 | | | | | | | | | | | | | |
|----------------|---|-----------------|---|--------------------|---------------|--|------------|----|--------------------|---------------|------|----------------------------------|------|--|-----------------|
| 부동산 (건물+토지) | 3억3,100만원 이하 | 건축물 |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주택 외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 | | | | | | | | |
| | | | 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 | | | | | | | | |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 | | | | | | | | | | | | |
| 주택 외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 | | | | | | | | |
| 토지 |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중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 | | | | | | | | | | |

V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서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 | | | | | |
|--|---|---------|-------------|----------|-------------------|
| 청약통장 자격요건 |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1순위</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p> <p>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합니다.)</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p> <p>-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p> | | | | |
|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 | | |
| | 구 분 |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 | 전용면적 85㎡ 이하 |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 전용면적 102㎡ 이하 |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전용면적 135㎡ 이하 |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 모든면적 |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p>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p> | | | | | |

| | | | | | |
|-------------|---|---------------------|-----|-----------------|----|
| 당첨자 선정방법 | <p>■ 당첨자 선정 순서</p> <p>-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p> <p>-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p> <p>-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p> <p>■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대전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대전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거주자)</p> <p>■ ②가점</p> <p>-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p> | | | | |
| | 구분 | | 가점제 | 추첨제 | |
|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 40% | 60% | |
| | 전용면적 85㎡ 초과 | | - | 100% | |
| |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 | | | |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 | | | | | |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35 | | 0명 | 5 | 4명 | 25 |
| | | | 1명 | 10 | 5명 | 30 |
| |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 | | 3명 | 20 |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본인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
| | | 배우자 |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 0 | 1년 이상 ~ 2년 미만 | 2 |
| 1년 미만 | 1 | | 2년 이상 | 3 | |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 점수 |
|-----------------|-------------------------|----|
| 1년 미만 | 6개월 미만 | 1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
| 2년 이상 | 1년 이상 | 3점 |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합니다.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 구 분 | 내 용 |
|------------------------------|---|
| <p>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p> |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p> <p>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p> <p>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합니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p> <p>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p> |
| <p>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p> |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합니다.</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합니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p>※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p>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p>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p>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 |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 단계 | 비율 | 내용 |
|-----|---------------|------------------------------|
| 1단계 | 추첨제 물량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
| 2단계 |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
| 3단계 |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비고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합니다.)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 | | |
|--------------------------------|--|---|
| 본인 신청 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
|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합니다. | |
| | <h4>인감증명 방식</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인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합니다.)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h4>본인서명확인 방식</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합니다.)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
|------------------------------------|--|
|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
| (민영주택) 공고단지 청약연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합니다.)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 당첨자발표 서비스 | <p>청약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4.07.30.(화) ~ 2024.08.08.(목)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
| | <p>문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일시 : 2024.07.30.(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Ⅶ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공통서류 | ○ |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약서 | 본인 | ● 견본주택 비치 |
| | ○ | |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20.12.21 이후 신규발급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로 발급) |
| | ○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인 불가 |
| | ○ | | 인감도장 | 본인 |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
| | ○ |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
| | ○ |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주택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 | | | | | |
|---------------------|----------|-----------------------|--------|---|--|
| | ○ | 혼인관계증명서 | [상세]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 발급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 설정 발급 ※ 기관추천특별공급의 경우 생략 |
| | ○ | 복무확인서 |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가능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 거주자격으로 당첨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
| | ○ | 주민등록표등본 | [전체포함] |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
| 해외 근무자 (단신부임) | ○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불가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배우자 및 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 설정 발급 |
| | ○ | 비자 발급 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 | 본인 및 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 발급 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또는 연간 183일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단신부임 인정 불가 |
| 기관추천 특별공급 | ○ | 특별공급 대상자 증명서류 |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한 인터넷 청약시 제외 |
| 철거주택 특별공급 | ○ | 특별공급 대상자 증명서류 |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한 인터넷 청약시 제외 |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 | 다자녀특별공급 배점기준표 |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견본주택 비치 |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각서 | | 본인 또는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견본주택 비치 |
| |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 | ○ |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또는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 | ○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 | 본인 또는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 | ○ | 주민등록표초본 | [전체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3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 | 혼인관계증명서 | [상세] | 피부양 직계비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 ○ | 자격요건 확인서 |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견본주택 비치 | |

| | | | | | | |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
| | ○ | | 소득증빙서류 | 만19세 이상 세대원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 |
| | | ○ |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 배우자 |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 | | ○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 | ● 입양의 경우 |
|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각서 | | | ● 견본주택 비치 |
| | | ○ | 비사업자확인각서 | | | ● 견본주택 비치 |
| | | ○ | 부동산 소유현황 | | 본인 및 세대원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제출 필요) ※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 | |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 |
| | | ○ |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물 | | | ● 소유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출력물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co.kr) |
| | ○ | 주민등록표초본 | [전체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 |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전체포함”발급 | |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 | | 청약가점 산정기준표 | 본인 | ● 견본주택 비치 | |
| | ○ | | 주민등록표초본 | [전체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 | ○ | |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 |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 설정 발급 | |
| | | ○ |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 배우자 |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 | | ○ | 주민등록표초본 | [상세] | 피부양 직계비속 | ●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 | | ○ | 혼인관계증명서 | [상세] | | ● 만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 |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 |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 발급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지만 인정.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 발급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 설정 발급 | | |
| | ○ | | 자격요건 확인서 | 본인 | ● 견본주택 비치 | |

| | | | | | | |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참조 | |
| |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
| | ○ | | 소득증빙 서류 | 만19세 이상 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 |
| | | ○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중인 태아 가구원수에 포함하기 위한 경우,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주자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
|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각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 비치 | |
|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의 경우 | |
| | | ○ | 혼인관계증명서 | [상세] | 피부양 직계비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 | | ○ |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의 전혼자녀 또는 직계존속을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 | | ○ | 주민등록표초본 | [전체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 | 부동산 소유현황 | | 본인 및 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제출 필요, 분리된 배우자의 세대원 포함) ※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신청결과 제출 |
| |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 (분리된 배우자의 세대원 포함) | | |
| | ○ |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물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출력물 (※ 모집공고 자산보유기준 참조)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co.kr) | | |
|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 | | | |
| 제3자 | ○ | | 위임장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
| 대리인 | ○ | | 신분증, 도장 | 대리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서명 또는 날인 | |
| 신청 시 추가사항 | ○ | | 인감증명서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 본인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 계약 위임용(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
|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 |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해당주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소형,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일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 ○ |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해당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 |

| | | | | | |
|-------------------|--|---|----------------|------|---|
| 전세 피해자 제출서류 | | ○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해당주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차계약서, 낙찰 증명서류(경매 - 매각허가결정, 공매 - 매각결정통지서 등) 등기사항증명서(임차주택), 임차주택 경·공매에서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 경매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 / 공매 : 배분계산서 등 |
|-------------------|--|---|----------------|------|---|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예비입주자) | | | |
| 공통 서류 | ○ | | 신분증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20.12.21 이후 신규발급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로 발급)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1통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 | ○ | | 인감도장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도: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인 불가 |
| | ○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
| | ○ |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발급 |
| | ○ |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주택신청자와의 관계) |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 설정 발급 |
| | ○ | | 복무확인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
| | ○ |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
|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 |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불가 |
| | ○ | | 비자 발급 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 본인 및 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 발급 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또는 연간 183일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단신부임 인정 불가 |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배우자 및 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 설정 발급 |
| 가점제, 예비입주자 | ○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30세 미만 나이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배우자 및 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있거나,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
| | ○ |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 ○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거주기간 확인 ※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 설정 발급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체류(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 |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 피부양 직계비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 설정 발급 ※ 단,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 하여야 합니다. | | | | |
| | ○ | 위임장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
| | ○ | 인감증명서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 계약용(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
| |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 | | |
| | ○ | 신분증, 도장 | 대리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서명 또는 날인 | |
|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해당주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소형,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 ○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해당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 |
| 전세피해자 제출서류 | ○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해당주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계약서, 낙찰 증명서류(경매 - 매각허가결정, 공매 - 매각결정통지서 등) • 등기사항증명서(임차주택), 임차주택 경·공매에서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 경매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 / 공매 : 배분계산서 등 | |

| 구분 | 계약기간 | 계약장소 |
|----------|-------------------------------------|-------------------------------|
| 당첨자 계약체결 | 2024.08.12.(월) ~ 2024.08.16.(금) 5일간 | 건본주택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1557번지) |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시 구비사항

| 구분 | 제출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해당자 | | | |
| 본인 계약시 | ○ | | 계약금 입금증 | 본인 |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 | ○ | | 신분증 |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 | ○ |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 ■ 본인발급분, 아파트계약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
| | ○ | | 인지세 납부 증명서 | | ■ 「인지세법」 및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발급후 사본 제출 ■ 수입인지 세액: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수입인지 구입처 - 오프라인 : 우체국·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인지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연대하여 균등 납부하여야 함. |
| | ○ |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 ■ 6억초과 주택 의무 제출 |
| 대리인 계약시 (본인 외 모두 제3자 간주) | ○ |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 | ○ | | 계약자 인감증명서 | 본인 |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아파트계약 위임용/본인발급분) 및 인감도장 |

- 상기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아파트 공급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 구분 | 금융기관명 | 납부계좌 | 예금주 | |
|----------|-------------|-----------------------|------------------|-----------|
| 아파트 공급금액 | 계약금(최초 계약시) | 하나은행 | 620-910126-41137 | (주)아나자산신탁 |
| | 중도금 / 잔금 | 계약체결시 세대별로 개별 가상계좌 부여 | | |

- 상기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현금 또는 수표 수납 및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합니다.

- '아파트 공급금액', '발코니 확장비 및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가 상이하오니 입금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하나은행 / 620-910026-51905 / (주)아나자산신탁)로 관리됩니다.

- 세대별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시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입금 시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101동 101호 : 서명란에 "1010101홍길동"이라고 정확히 기재)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본 공급계약 및 발코니 확장 계약 등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가산세) 및 제세공과금 등은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인지(기재금액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를 계약서 작성시점에 계약서에 첨부 하여야하며, 해당 수입인지는 소유

- 권 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 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명으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관련 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됩니다.
- 부적격으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이종당첨자 및 부적격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4호)
 -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 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②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1)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소유현황 등)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아래에 해당하는 지역 및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1)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 6개월 3) 위축지역 : 3개월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자를 판명합니다.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며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자를 판명합니다.
- 청약접수 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 소유권 이전시 대출금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 및 등기절차에 협조하여야 하고, 해당 분양주택의 담보평가결과 담보부족분이 발생할 때에는 담보부족분에 대한 중도금 대출 금액을 계약자가 책임지고 대출 금융기관에 상환해야 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단지모형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그 차이가 현저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상 계약사항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의 계약시점에 따라 분양조건(분양가격, 옵션제공 등)이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소급적용이 불가할 수 있으니,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학생은 인근 학교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 본 아파트의 인근 학교 신설계획은 교육부 재정투자심사 결과와 학교 설립 정책, 교육여건 변화 등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공동주택 입주일자와 개교 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 체결 후 연 2회(반기 1회) 이상 입주예정자(“계약자”를 말함)를 공사 현장으로 초청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통지는 설명회 예정일 10일 전까지 우편으로 하고, 설명회 당일 미 참석자에 대한 별도의 설명회는 하지 않습니다.)
- 외국인(법인·단체포함)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 가.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구입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 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취득신고를 합니다. (단, 공급계약이나, 매매는 부동산거래신고로 같음하고 중여, 교환 등만 해당합니다.)
 - 나. 외국인이 상속 또는 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합니다.
 - 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를 합니다.
 - 라.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마치고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규에 위반되는 행위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공급금액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 대출 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 후불제‘ 조건으로 용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대금의 60%(중도금)에 한해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신청시 대출취급기관 등에 의거 분양대금의 10%(계약금) 원납 이후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 금융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시행위탁사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 본 아파트는 시행위탁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이자와 관련하여서는 이자후불제를 적용하며, 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따라 중도금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직전 이자납부일까지는 시행위탁사가 납부하고, 이후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기로 합니다. 또한 계약자가 입주지정기간 내 미납시에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위탁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규제 대상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합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사업주체는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분양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적격대출”)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납부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금융관련 정부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분양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분양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닙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시행위탁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 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부 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해당 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 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법」제48조의 2 및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 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개시 약 60일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

■ 입주예정일 : 2027년 08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 2021.02.19.에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3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하고, 실입주 2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지하암반발생,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입주하는 경우 잔금 완납, 소유권이전,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및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고,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계약자의 관리 부재, 부주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한 불이익 및 피해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 생활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수영장, 코인세탁실, H-위드핏, H-카페, H-아이숲,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피트니스, GX룸, 사우나, 작은도서관, 독서실, 주민회의실, 게스트하우스, 키즈스테이션 및 기타 부대복리시설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하자보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되며, 기준 도면은 사용검사(준공인가) 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 |
|--------------------------------|---|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 주택처분 기준일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중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p>*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p> |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합니다.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합니다.)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임차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 각 호 및 제3조제1항의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 나. 임차주택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실제 거래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며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 임차주택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임차주택에 거주한 경우 |

| ■ 발코니 확장 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원) | | | | |
|---------------------------|------------|-----------|------------|------------|
| 주택형(약식표기)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 | | 계약시 | 2025.01.20 | 입주지정기간 |
| 84A | 28,000,000 | 2,800,000 | 2,800,000 | 22,400,000 |
| 84B | 28,000,000 | 2,800,000 | 2,800,000 | 22,400,000 |
| 101A | 31,000,000 | 3,100,000 | 3,100,000 | 24,800,000 |
| 101C | 33,000,000 | 3,300,000 | 3,300,000 | 26,400,000 |
| 151P | 45,000,000 | 4,500,000 | 4,500,000 | 36,000,000 |
| 170P | 50,000,000 | 5,000,000 | 5,000,000 | 40,000,000 |

■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계좌

| 구분 | | 금융기관명 | 납부계좌 | 예금주 |
|----------|-------------|-----------------------|------------------|-----------|
| 발코니 확장금액 | 계약금(최초 계약시) | 하나은행 | 620-910138-41137 | (주)하나자산신탁 |
| | 중도금, 잔금 | 계약 체결시 세대별 개별 가상계좌 부여 | | |

- 발코니 확장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사업주체와 계약자 각각 납부)으로 수입인지(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만원)를 계약서 작성시점에 계약서에 첨부해야 하며, 해당 수입인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 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 상기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견본주택에서 현금 또는 수표 수납 및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금액 납부계좌는 아파트 공급금액, 추가 선택품목 금액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입금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하나은행 / 620-910026-52505 / (주)하나자산신탁)로 관리됩니다.
- 세대별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시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입금 시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101동 101호 : 서명란에 "1010101홍길동"이라고 정확히 기재)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고,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일부 유무상 옵션 반영)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공간 활용도가 저하되거나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일부 실 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발코니의 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 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 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합니다. (전매시에도 최초 양도인의 발코니 확장 여부 계약에 따른 양수인은 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 계약 불가합니다)
-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과 관련된 마감자재 등은 제품의 품질, 품귀 등의 사유로 동급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 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 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 세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는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

- 관하며,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색상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창호는 사업승인변경 도서에 준하여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격이 다를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주기적인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을 요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환기 덕트 포함)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관계법령에 따라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 발코니에 설치되는 발코니 난간 및 창호 등의 형태 및 사양, 제조사와 모델, 색상/디자인 등은 기능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본 아파트 시행자는 적절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시행자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1)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 구분 | 주택형 (약식표기) | 설치위치 | 설치대수 (실내기)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비고 |
|-----------|--------------------------------|-----------------------|---------------|------------|-----------|------------|-----------|----|
| | | | | | 계약시 | 2025.01.20 | 입주지정기간 | |
| 전실 일반형 | 84A | 거실, 주방, 침실1 | 3 | 5,800,000 | 580,000 | 580,000 | 4,640,000 | |
| |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 4 | 7,400,000 | 740,000 | 740,000 | 5,920,000 | |
| |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 5 | 9,560,000 | 956,000 | 956,000 | 7,648,000 | |
| | 84B | 거실, 주방, 침실1 | 3 | 5,800,000 | 580,000 | 580,000 | 4,640,000 | |
| |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 4 | 7,400,000 | 740,000 | 740,000 | 5,920,000 | |
| |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 5 | 9,560,000 | 956,000 | 956,000 | 7,648,000 | |
| | 101A | 거실, 주방, 침실1 | 3 | 5,800,000 | 580,000 | 580,000 | 4,640,000 | |
| |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 4 | 7,400,000 | 740,000 | 740,000 | 5,920,000 | |
| |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 5 | 9,560,000 | 956,000 | 956,000 | 7,648,000 | |
| | 101C | 거실, 주방, 침실1 | 3 | 5,800,000 | 580,000 | 580,000 | 4,640,000 | |
| |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 4 | 7,400,000 | 740,000 | 740,000 | 5,920,000 | |
| |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 5 | 9,560,000 | 956,000 | 956,000 | 7,648,000 | |
| 151P | 거실, 주방, 가족실 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 | 7 | 16,500,000 | 1,650,000 | 1,650,000 | 13,200,000 | | |
| 170P | 거실, 주방, 가족실 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 | 7 | 16,500,000 | 1,650,000 | 1,650,000 | 13,200,000 | | |
| 전실 고급형 | 84A | 거실, 주방, 침실1 | 3 | 6,650,000 | 665,000 | 665,000 | 5,320,000 | |
| |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 4 | 8,400,000 | 840,000 | 840,000 | 6,720,000 | |
| |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 5 | 10,810,000 | 1,081,000 | 1,081,000 | 8,648,000 | |
| | 84B | 거실, 주방, 침실1 | 3 | 6,650,000 | 665,000 | 665,000 | 5,320,000 | |
| |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 4 | 8,400,000 | 840,000 | 840,000 | 6,720,000 | |
| |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 5 | 10,810,000 | 1,081,000 | 1,081,000 | 8,648,000 | |
| | 101A | 거실, 주방, 침실1 | 3 | 6,650,000 | 665,000 | 665,000 | 5,320,000 | |
| |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 4 | 8,400,000 | 840,000 | 840,000 | 6,720,000 | |

| | | | | | | |
|------|--------------------------------|---|------------|-----------|-----------|------------|
| 101C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 5 | 10,810,000 | 1,081,000 | 1,081,000 | 8,648,000 |
| | 거실, 주방, 침실1 | 3 | 6,650,000 | 665,000 | 665,000 | 5,320,000 |
|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 4 | 8,400,000 | 840,000 | 840,000 | 6,720,000 |
|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 5 | 10,810,000 | 1,081,000 | 1,081,000 | 8,648,000 |
| 151P | 거실, 주방, 가족실 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 | 7 | 18,250,000 | 1,825,000 | 1,825,000 | 14,600,000 |
| 170P | 거실, 주방, 가족실 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 | 7 | 18,250,000 | 1,825,000 | 1,825,000 | 14,600,000 |

-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거실에는 스탠드 에어컨용 냉매배관 및 콘센트, 안방에는 벽걸이 에어컨용 냉매배관 및 콘센트가 시공되며, 시스템 에어컨을 위한 천장 냉매배관 및 드레인도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및 실외기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실외기는 별도로 구획된 실외기실 또는 외부 테라스공간(151P, 170P)에 설치됨 - 시스템 에어컨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설비, 구조 등의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 시 기본 제공되는 냉매배관과 콘센트는 시공되지 않으며, 해당 공사비는 옵션금액에 차감반영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시공 시 설치되는 제품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장비로부터 운전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수준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선정된 제품의 형태·설치 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설치안에 따라 실외기 용량이 상이하므로, 추후에 실내기만을 추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실내기 위치는 견본주택과 일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에어컨 용량은 실면적에 상응하는 냉방부하에 따라 결정되며 동일 주택형이라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시스템 에어컨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품목에 대한 추가 옵션계약이 불가하며, 공급계약 체결 기간과 별도로 옵션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일정은 추후 통보예정)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본 주택의 디자인 컨셉에 따른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니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반드시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2) 가전옵션

| 주택형 | 품목 | | 모델명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비고 | | |
|-------|---------|-------------------|-------|---------------|-----------|------------|---------|-----------|--------------------|------------|
| | | | | | 계약시 | 2025.01.20 | 입주지정기간 | | | |
| 전 주택형 | 택1 | 빌트인 냉장고 | 삼성전자 | 비스포크 | 5,540,000 | 554,000 | 554,000 | 4,432,000 | 프리미엄 다이닝 선택시 선택 불가 | |
| | | 냉장/냉동/김치냉장고+키큰장 | LG전자 | 오브제 | 5,660,000 | 566,000 | 566,000 | 4,528,000 | | |
| | | 기능성 오븐 | 삼성전자 | NQ36A6555CK | 320,000 | 32,000 | 32,000 | 256,000 | | |
| | | 식기세척기 | 삼성전자 | DW60T7065SS | 850,000 | 85,000 | 85,000 | 680,000 | | |
| | 택1 | 3구 인덕션 | 삼성전자 | NZ63DB657CAWS | 1,300,000 | 130,000 | 130,000 | 1,040,000 | | |
| | | 2구 인덕션 + 1구 하이라이트 | 쿠첸 | CEN-SN3A0NBA | 400,000 | 40,000 | 40,000 | 320,000 | | |
| | | 살균 청정 환기 시스템 | - | - | 2,360,000 | 236,000 | 236,000 | 1,888,000 | | 84, 101 |
| | | | | | 4,720,000 | 472,000 | 472,000 | 3,776,000 | | 151P, 170P |
| | | 현관 에어샤워 시스템 | - | - | 1,080,000 | 108,000 | 108,000 | 864,000 | | |
| | | H - BELL | - | - | 210,000 | 21,000 | 21,000 | 168,000 | | |
| | | 드레스룸 빌트인 제습기 | - | - | 780,000 | 78,000 | 78,000 | 624,000 | | 84, 101 |
| | | | | | 1,560,000 | 156,000 | 156,000 | 1,248,000 | | 151P, 170P |
| | 전동빨래건조대 | 씨넛 | ED800 | 160,000 | 16,000 | 16,000 | 128,000 | | | |

- 추가선택품목 시공은 계약자가 임의로 시공 위치 지정 및 마감재 선택이 불가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냉동고/냉장고/김치냉장고는 일괄공급 옵션이니, 이 점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가전 선택품목은 주방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주택형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점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 가전옵션 계약 체결 이후 가전옵션 제품 특성 상 시장 판매가가 감액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차액이나, 감액에 대한 계약 해지 및 위로금 지급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중 일부품목은 주택형별 사양이 다르므로, 해당 주택형의 형태를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공사 시 형태, 재질, 사양 등이 등급 수준의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3) 마감옵션

| 구분 | 주택형 (약식표기) | 위치 | 선택사항 | 품목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비고 | | |
|------|---------------|-----|--------|--------------------------------|--|-------------------------------------|------------|-----------|-----------|-----------------------|--|
| | | | | | | 계약시 | 2025.01.20 | 입주지정기간 | | | |
| 마감옵션 | 84A | 주방 | 택1 | 주방벽체/상판 고급화+ 매립형콘센트 | 세라믹타일 | 5,760,000 | 576,000 | 576,000 | 4,608,000 | 프리미엄 다이닝 선택시 선택 불가 | |
| | | | | | 엔지니어드스톤1 | 3,290,000 | 329,000 | 329,000 | 2,632,000 | | |
| | | | | | 엔지니어드스톤2 | 3,290,000 | 329,000 | 329,000 | 2,632,000 | | |
| | | | 주방 고급화 | | 상부 유리장+상하부 간접조명 +주방수전 (아메리칸스탠다드) | 2,050,000 | 205,000 | 205,000 | 1,640,000 | 프리미엄 다이닝 선택시 선택 불가 | |
| | | 거실 | 택1 | 아트월 고급화 | 포세린타일 | 1,000,000 | 100,000 | 100,000 | 800,000 | | |
| | | | | | 세라믹타일1 | 2,380,000 | 238,000 | 238,000 | 1,904,000 | | |
| | | | | | 세라믹타일2 | 2,380,000 | 238,000 | 238,000 | 1,904,000 | | |
| | | 복도 | 택1 | 복도 고급화 (거실아트월 선택시 선택 가능) | 포세린타일 | 4,320,000 | 432,000 | 432,000 | 3,456,000 | | |
| | | | | | | 4,670,000 | 467,000 | 467,000 | 3,736,000 | 룸인룸 선택시 | |
| | | | | | 세라믹타일1 | 8,000,000 | 800,000 | 800,000 | 6,400,000 | | |
| | | | | | | 8,650,000 | 865,000 | 865,000 | 6,920,000 | 룸인룸 선택시 | |
| | | | | | 세라믹타일2 | 8,000,000 | 800,000 | 800,000 | 6,400,000 | | |
| | | | | | 8,650,000 | 865,000 | 865,000 | 6,920,000 | 룸인룸 선택시 | | |
| | | 바닥 | 택1 | | 광폭 강마루(전실) | 190,000 | 19,000 | 19,000 | 152,000 | | |
| | | | | | 헤링본 강마루(전실) | 1,570,000 | 157,000 | 157,000 | 1,256,000 | | |
| | | | | | 포세린타일(거실/주방/복도) | 3,960,000 | 396,000 | 396,000 | 3,168,000 | | |
| | | | | | 광폭 강마루(침실) + 포세린타일(거실/주방/복도) | 4,150,000 | 415,000 | 415,000 | 3,320,000 | | |
| | | | | | 헤링본 강마루(침실) + 포세린타일(거실/주방/복도) | 4,750,000 | 475,000 | 475,000 | 3,800,000 | | |
| | | 욕실 | | | 욕실1 고급화 벽체 유럽산 + 바닥 중국산 + 고급 수전 + 컬러 샤워부스 | 2,800,000 | 280,000 | 280,000 | 2,240,000 | | |
| | | | | | 욕실2 고급화 벽체 유럽산 + 바닥 중국산 + 고급 수전 | 3,580,000 | 358,000 | 358,000 | 2,864,000 | | |
| | | | | | 욕실 비데 : 일체형 양변기 | 2,000,000 | 200,000 | 200,000 | 1,600,000 | | |
| | | | | | 욕실 중문(스빙도어) | 2,600,000 | 260,000 | 260,000 | 2,080,000 | | |
| | | 84B | 주방 | 택1 | 주방벽체/상판 고급화+ 매립형콘센트 | 세라믹타일 | 6,040,000 | 604,000 | 604,000 | 4,832,000 | |
| | | | | | | 엔지니어드스톤1 | 3,590,000 | 359,000 | 359,000 | 2,872,000 | |
| | | | | | | 엔지니어드스톤2 | 3,590,000 | 359,000 | 359,000 | 2,872,000 | |
| | | | | 주방 고급화 | | 상부 유리장+상하부 간접조명 +주방수전 (아메리칸스탠다드) | 2,040,000 | 204,000 | 204,000 | 1,632,000 | |
| | | | 거실 | 택1 | 아트월 고급화 | 포세린타일 | 1,000,000 | 100,000 | 100,000 | 800,000 | |
| | | | | | | 세라믹타일1 | 2,390,000 | 239,000 | 239,000 | 1,912,000 | |
| | | | | | | 세라믹타일2 | 2,390,000 | 239,000 | 239,000 | 1,912,000 | |
| | | | 복도 | 택1 | 복도 고급화 (거실아트월 선택시 선택 가능) | 포세린타일 | 4,560,000 | 456,000 | 456,000 | 3,648,000 | |
| | 4,910,000 | | | | | 491,000 | 491,000 | 3,928,000 | 룸인룸 선택시 | | |

| | | | | | | | | | |
|-----------|--------------------------------------|--------|---|----------------------------------|-----------|-----------|----------------------|----------------------|--------------------|
| 101A | 바닥 | 세라믹타일1 | | 6,800,000 | 680,000 | 680,000 | 5,440,000 | | |
| | | | | 7,440,000 | 744,000 | 744,000 | 5,952,000 | 룸인룸 선택시 | |
| | | | 세라믹타일2 | | 6,800,000 | 680,000 | 680,000 | 5,440,000 | |
| | | | | | 7,440,000 | 744,000 | 744,000 | 5,952,000 | 룸인룸 선택시 |
| | | 택1 | 광폭 강마루(전실) | | 190,000 | 19,000 | 19,000 | 152,000 | |
| | | | 헤링본 강마루(전실) | | 1,570,000 | 157,000 | 157,000 | 1,256,000 | |
| | | | 포세린타일(거실/주방/복도) | | 3,960,000 | 396,000 | 346,000 | 3,168,000 | |
| | | | 광폭 강마루(침실) + 포세린타일(거실/주방/복도) | | 4,150,000 | 415,000 | 415,000 | 3,320,000 | |
| | | | 헤링본 강마루(침실) + 포세린타일(거실/주방/복도) | | 4,750,000 | 475,000 | 475,000 | 3,800,000 | |
| | | 욕실 | 욕실1 고급화 벽체 유럽산 + 바닥 중국산 + 고급 수전 + 컬러 샤워부스 | | 2,800,000 | 280,000 | 280,000 | 2,240,000 | |
| | | | 욕실2 고급화 벽체 유럽산 + 바닥 중국산 + 고급 수전 | | 3,580,000 | 358,000 | 358,000 | 2,864,000 | |
| | | | 욕실 비데 : 일체형 양변기 | | 2,000,000 | 200,000 | 200,000 | 1,600,000 | |
| | 욕실 중문(스윙도어) | | 2,600,000 | 260,000 | 260,000 | 2,080,000 | | | |
| | 주방 | 택1 | 주방벽체/상판 고급화+ 매립형콘센트 | 세라믹타일 | 6,310,000 | 631,000 | 631,000 | 5,048,000 | 프리미엄 다이닝 선택시 선택 불가 |
| | | | | 엔지니어드스톤1 | 3,590,000 | 359,000 | 359,000 | 2,872,000 | |
| | | | | 엔지니어드스톤2 | 3,590,000 | 359,000 | 359,000 | 2,872,000 | |
| | | 주방 고급화 | | 상부 유리장+상하부 간접조명 +주방수전 (아메리칸스탠다드) | 2,440,000 | 244,000 | 244,000 | 1,952,000 | 프리미엄 다이닝 선택시 선택 불가 |
| | 거실 | 택1 | 아트월 고급화 | 포세린타일 | 1,070,000 | 107,000 | 107,000 | 856,000 | |
| | | | | 세라믹타일1 | 2,550,000 | 255,000 | 255,000 | 2,040,000 | |
| | | | | 세라믹타일2 | 2,550,000 | 255,000 | 255,000 | 2,040,000 | |
| | 복도 | 택1 | 복도 고급화 (거실아트월 선택시 선택 가능) | 포세린타일 | 4,650,000 | 465,000 | 465,000 | 3,720,000 | |
| | | | | | 5,010,000 | 501,000 | 501,000 | 4,008,000 | 룸인룸 선택시 |
| | | | | 3,670,000 | 367,000 | 367,000 | 2,936,000 | 와이드 다이닝 프리미엄 다이닝 선택시 | |
| | | | | 세라믹타일1 | 7,840,000 | 784,000 | 784,000 | 6,272,000 | |
| | | | | | 8,490,000 | 849,000 | 849,000 | 6,792,000 | 룸인룸 선택시 |
| | | | | 5,950,000 | 595,000 | 595,000 | 4,760,000 | 와이드 다이닝 프리미엄 다이닝 선택시 | |
| | | | 세라믹타일2 | 7,840,000 | 784,000 | 784,000 | 6,272,000 | | |
| | | | | 8,490,000 | 849,000 | 849,000 | 6,792,000 | 룸인룸 선택시 | |
| 5,950,000 | | | | 595,000 | 595,000 | 4,760,000 | 와이드 다이닝 프리미엄 다이닝 선택시 | | |
| 바닥 | | | 택1 | 광폭 강마루(전실) | | 240,000 | 24,000 | 24,000 | 192,000 |
| | 헤링본 강마루(전실) | | | 1,940,000 | 194,000 | 194,000 | 1,552,000 | | |
| | 포세린타일(거실/주방/복도) | | | 4,810,000 | 481,000 | 481,000 | 3,848,000 | | |
| | 광폭 강마루(침실) + 포세린타일(거실/주방/복도) | | | 5,050,000 | 505,000 | 505,000 | 4,040,000 | | |
| | 헤링본 강마루(침실) + 포세린타일(거실/주방/복도) | | | 5,670,000 | 567,000 | 567,000 | 4,536,000 | | |
| 욕실 | 욕실1 고급화 벽체 유럽산 + 바닥 중국산 + 고급 수전 + 컬러 | | 2,810,000 | 281,000 | 281,000 | 2,248,000 | | | |

| | | | | | | | | | | |
|------|-----------|---|---------------------------|-------------------------------------|------------|------------|-----------|-----------|----------------------------|--------|
| 101C | 욕실 | 샤워부스 | | | | | | | | |
| | | 욕실2 고급화 벽체 유럽산 + 바닥 중국산 + 고급 수전 | | 4,060,000 | 406,000 | 406,000 | 3,248,000 | | | |
| | | 욕실 비데 : 일체형 양변기 | | 2,000,000 | 200,000 | 200,000 | 1,600,000 | | | |
| | | 욕실 중문(스영도어) | | 2,600,000 | 260,000 | 260,000 | 2,080,000 | | | |
| | 주방 | 택1 | 주방벽체/상판 고급화+ 매립형콘센트 | 세라믹타일 | 6,160,000 | 616,000 | 616,000 | 4,928,000 | | |
| | | | | 엔지니어드스톤1 | 3,340,000 | 334,000 | 334,000 | 2,672,000 | | |
| | | | | 엔지니어드스톤2 | 3,340,000 | 334,000 | 334,000 | 2,672,000 | | |
| | | 주방 고급화 | | 상부 유리장+상하부 간접조명 +주방수전 (아메리칸스탠다드) | 2,330,000 | 233,000 | 233,000 | 1,864,000 | | |
| | | 택1 | 와이드 아일랜드 | 식탁형 아일랜드 | 1,350,000 | 135,000 | 135,000 | 1,080,000 | | |
| | | | | 식탁형 아일랜드 세라믹타일 | 3,290,000 | 329,000 | 329,000 | 2,632,000 | 주방벽체/상판 세라믹 선택시 | |
| | | | | 식탁형 아일랜드 엔지니어드스톤1 | 1,500,000 | 150,000 | 150,000 | 1,200,000 | 주방벽체/상판 엔지니어드스톤1 선택시 | |
| | | | | 식탁형 아일랜드 엔지니어드스톤2 | 1,500,000 | 150,000 | 150,000 | 1,200,000 | 주방벽체/상판 엔지니어드스톤2 선택시 | |
| | | 거실 | 택1 | 아트월 고급화 | 포세린타일 | 900,000 | 90,000 | 90,000 | 720,000 | |
| | | | | | 세라믹타일1 | 2,160,000 | 216,000 | 216,000 | 1,728,000 | |
| | | | | | 세라믹타일2 | 2,160,000 | 216,000 | 216,000 | 1,728,000 | |
| | | 복도 | 택1 | 복도 고급화 (거실아트월 선택시 선택 가능) | 포세린타일 | 6,690,000 | 669,000 | 669,000 | 5,352,000 | |
| | 7,050,000 | | | | | 705,000 | 705,000 | 5,640,000 | 룸인룸 선택시 | |
| | 4,220,000 | | | | | 422,000 | 422,000 | 3,376,000 | 복도-침실3 통합형 선택시 | |
| | 세라믹타일1 | | | | 11,600,000 | 1,160,000 | 1,160,000 | 9,280,000 | | |
| | | | | | 12,250,000 | 1,225,000 | 1,225,000 | 9,800,000 | 룸인룸 선택시 | |
| | | | | | 6,880,000 | 688,000 | 688,000 | 5,504,000 | 복도-침실3 통합형 선택시 | |
| | 세라믹타일2 | | | | 11,600,000 | 1,160,000 | 1,160,000 | 9,280,000 | | |
| | | | | | 12,250,000 | 1,225,000 | 1,225,000 | 9,800,000 | 룸인룸 선택시 | |
| | | | | | 6,880,000 | 688,000 | 688,000 | 5,504,000 | 복도-침실3 통합형 선택시 | |
| | 바닥 | | | | 택1 | 광폭 강마루(전실) | | 240,000 | 24,000 | 24,000 |
| | | 헤링본 강마루(전실) | | 1,940,000 | | 194,000 | 194,000 | 1,552,000 | | |
| | | 포세린타일(거실/주방/복도) | | 4,810,000 | | 481,000 | 481,000 | 3,848,000 | | |
| | | 광폭 강마루(침실) + 포세린타일(거실/주방/복도) | | 5,050,000 | | 505,000 | 505,000 | 4,040,000 | | |
| | | 헤링본 강마루(침실) + 포세린타일(거실/주방/복도) | | 5,670,000 | | 567,000 | 567,000 | 4,536,000 | | |
| | 욕실 | 욕실1 고급화 벽체 유럽산 + 바닥 중국산 + 고급 수전 + 컬러 샤워부스 | | 2,810,000 | 281,000 | 281,000 | 2,248,000 | | | |
| | | 욕실2 고급화 벽체 유럽산 + 바닥 중국산 + 고급 수전 | | 4,060,000 | 406,000 | 406,000 | 3,248,000 | | | |
| | | 욕실 비데 : 일체형 양변기 | | 2,000,000 | 200,000 | 200,000 | 1,600,000 | | | |

| | | | | | | | | | | | | | |
|----------|-------------------------------|--|--------------------------------|---------------------------|-------------------------------------|-------------|-----------|------------|---------------------------------------|-----------------------|-----------------------|--|--|
| 151P | 주방 | 택1 | 주방벽체/상판 고급화+ 매립형콘센트 | 욕실 중문(스윙도어) | | 2,600,000 | 260,000 | 260,000 | 2,080,000 | 프리미엄 다이닝 선택시 선택 불가 | | | |
| | | | | 세라믹타일 | 6,600,000 | 660,000 | 660,000 | 5,280,000 | | | | | |
| | | | | 엔지니어드스톤1 | 4,040,000 | 404,000 | 404,000 | 3,232,000 | | | | | |
| | | | | 엔지니어드스톤2 | 4,040,000 | 404,000 | 404,000 | 3,232,000 | | | | | |
| | | 주방 고급화 | | | 상부 유리장+상하부 간접조명 +주방수전 (아메리칸스탠다드) | 2,220,000 | 222,000 | 222,000 | 1,776,000 | 프리미엄 다이닝 선택시 선택 불가 | | | |
| | 거실 | 택1 | 아트월 고급화 | 포세린타일 | 1,100,000 | 110,000 | 110,000 | 880,000 | | | | | |
| | | | | 세라믹타일1 | 2,620,000 | 262,000 | 262,000 | 2,096,000 | | | | | |
| | | | | 세라믹타일2 | 2,620,000 | 262,000 | 262,000 | 2,096,000 | | | | | |
| | 복도 | 택1 | 복도 고급화 (거실아트월 선택시 선택 가능) | 포세린타일 | 12,710,000 | 1,271,000 | 1,271,000 | 10,168,000 | | | | | |
| | | | | | 13,120,000 | 1,312,000 | 1,312,000 | 10,496,000 | 룸인룸 선택시 와이드 다이닝 프리미엄 다이닝 선택시 | | | | |
| | | | | 세라믹타일1 | 17,470,000 | 1,747,000 | 1,747,000 | 13,976,000 | | | | | |
| | | | | | 18,210,000 | 1,821,000 | 1,821,000 | 14,568,000 | 룸인룸 선택시 | | | | |
| | | | | | 16,780,000 | 1,678,000 | 1,678,000 | 13,424,000 | 와이드 다이닝 프리미엄 다이닝 선택시 | | | | |
| | | | | 세라믹타일2 | 17,470,000 | 1,747,000 | 1,747,000 | 13,976,000 | | | | | |
| | | | | | 18,210,000 | 1,821,000 | 1,821,000 | 14,568,000 | 룸인룸 선택시 | | | | |
| | | | | | 16,780,000 | 1,678,000 | 1,678,000 | 13,424,000 | 와이드 다이닝 프리미엄 다이닝 선택시 | | | | |
| | | | | 바닥 | 택1 | 광폭 강마루(전실) | | 350,000 | 35,000 | 35,000 | 280,000 | | |
| | | | | | | 헤링본 강마루(전실) | | 2,870,000 | 287,000 | 287,000 | 2,296,000 | | |
| | 포세린타일(거실/주방/복도) | | 7,340,000 | | | 734,000 | 734,000 | 5,872,000 | | | | | |
| | 광폭 강마루(침실) + 포세린타일(거실/주방/복도) | | 7,690,000 | | | 769,000 | 769,000 | 6,152,000 | | | | | |
| | 헤링본 강마루(침실) + 포세린타일(거실/주방/복도) | | 8,690,000 | | | 869,000 | 869,000 | 6,952,000 | | | | | |
| | 욕실 | 욕실1 고급화 벽체 유럽산 + 바닥 중국산 + 고급 수전 | | | 3,410,000 | 341,000 | 341,000 | 2,728,000 | | | | | |
| | | 욕실2 고급화 벽체 유럽산 + 바닥 중국산 + 고급 수전 | | | 4,400,000 | 440,000 | 440,000 | 3,520,000 | | | | | |
| | | 욕실3 고급화 벽체 유럽산 + 바닥 중국산 + 고급 수전 + 컬러 샤워부스 | | | 3,580,000 | 358,000 | 358,000 | 2,864,000 | | | | | |
| | | 욕실 비데 : 일체형 양변기 | | | 3,000,000 | 300,000 | 300,000 | 2,400,000 | | | | | |
| | | 욕실 중문(스윙도어) | | | 2,750,000 | 275,000 | 275,000 | 2,200,000 | | | | | |
| | 170P | 주방 | 택1 | 주방벽체/상판 고급화+ 매립형콘센트 | 세라믹타일 | 7,500,000 | 750,000 | 750,000 | 6,000,000 | 프리미엄 다이닝 선택시 선택 불가 | | | |
| | | | | | 엔지니어드스톤1 | 4,450,000 | 445,000 | 445,000 | 3,560,000 | | | | |
| 엔지니어드스톤2 | | | | | 4,450,000 | 445,000 | 445,000 | 3,560,000 | | | | | |
| 주방가구 고급화 | | | | | 상부 유리장+상하부 간접조명 +주방수전 (아메리칸스탠다드) | 2,400,000 | 240,000 | 240,000 | 1,920,000 | | 프리미엄 다이닝 선택시 선택 불가 | | |
| 거실 | | 택1 | 아트월 고급화 | 포세린타일 | 1,230,000 | 123,000 | 123,000 | 984,000 | | | | | |
| | | | | 세라믹타일1 | 2,940,000 | 294,000 | 294,000 | 2,352,000 | | | | | |
| | | | | 세라믹타일2 | 2,940,000 | 294,000 | 294,000 | 2,352,000 | | | | | |
| 복도 | | 택1 | 복도 고급화 (거실아트월 선택시 | 포세린타일 | 11,090,000 | 1,109,000 | 1,109,000 | 8,872,000 | | | | | |
| | | | | | 11,490,000 | 1,149,000 | 1,149,000 | 9,192,000 | 룸인룸 선택시 | | | | |

| | | | | | | | | | |
|--|----|---|--------|-------------|------------|-----------|------------|------------|---------|
| | 바닥 | 선택 가능) | 세라믹타일1 | 15,720,000 | 1,572,000 | 1,572,000 | 12,576,000 | 룸인룸 선택시 | |
| | | | | 16,450,000 | 1,645,000 | 1,645,000 | 13,160,000 | | |
| | | | 선택 가능) | 세라믹타일2 | 15,720,000 | 1,572,000 | 1,572,000 | 12,576,000 | 룸인룸 선택시 |
| | | | | | 16,450,000 | 1,645,000 | 1,645,000 | 13,160,000 | |
| | | | 택1 | 광폭 강마루(전실) | 400,000 | 40,000 | 40,000 | 320,000 | |
| | | | | 헤링본 강마루(전실) | 3,250,000 | 325,000 | 325,000 | 2,600,000 | |
| | | 포세린타일(거실/주방/복도) | | 8,860,000 | 886,000 | 886,000 | 7,088,000 | | |
| | | 광폭 강마루(침실) + 포세린타일(거실/주방/복도) | | 9,260,000 | 926,000 | 926,000 | 7,408,000 | | |
| | | 헤링본 강마루(침실) + 포세린타일(거실/주방/복도) | | 10,320,000 | 1,032,000 | 1,032,000 | 8,256,000 | | |
| | 욕실 | 욕실1 고급화 벽체 유럽산 + 바닥 중국산 + 고급 수전 | | 3,410,000 | 341,000 | 341,000 | 2,728,000 | | |
| | | 욕실2 고급화 벽체 유럽산 + 바닥 중국산 + 고급 수전 | | 4,400,000 | 440,000 | 440,000 | 3,520,000 | | |
| | | 욕실3 고급화 벽체 유럽산 + 바닥 중국산 + 고급 수전 + 컬러 샤워부스 | | 3,580,000 | 358,000 | 358,000 | 2,864,000 | | |
| | | 욕실 비데 : 일체형 양변기 | | 3,000,000 | 300,000 | 300,000 | 2,400,000 | | |
| | | 욕실 중문(스윙도어) | | 2,750,000 | 275,000 | 275,000 | 2,200,000 | | |

(4) 가구옵션

| 구분 | 주택형 (약식표기) | 위치 | 선택사항 | 품목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비고 | | |
|---------------------------------|---------------|----------------------------------|---------------------------------|--|------------------------------|-----------|------------|-----------|-----------|------------|-----------|
| | | | | | | 계약시 | 2025.01.20 | 입주지정기간 | | | |
| 가구 옵션 | 84A | 현관 | 택1 | 현관 중문 | 3연동 수동 | 1,480,000 | 148,000 | 148,000 | 1,184,000 | | |
| | | | | | 3연동 자동 | 2,560,000 | 256,000 | 256,000 | 2,048,000 | | |
| | | | 현관 고급화 : 가구마감 고급화 + 하부조명 + 시트판넬 | | | | | 2,390,000 | 239,000 | 239,000 | 1,912,000 |
| | | 침실 | 택1 | 침실2/3 | 불박이장(1개소) | 1,540,000 | 154,000 | 154,000 | 1,232,000 | | |
| | | | | 침실2-3 | 룸인룸(불박이장(파우더포함)+3연동 슬라이딩 도어) | 4,500,000 | 450,000 | 450,000 | 3,600,000 | | |
| | | | 택1 | 침실1 | 불박이장 고급화 | 4,290,000 | 429,000 | 429,000 | 3,432,000 | | |
| | | | | | 불박이장 | 2,610,000 | 261,000 | 261,000 | 2,088,000 | | |
| | | 침실1 : 와이드 드레스룸(벽판넬형드레스룸+슬라이딩 도어) | | | | | 6,200,000 | 620,000 | 620,000 | 4,960,000 | |
| | | 알파룸 | 택1 | 와이드 다이닝(기존 알파룸 변경, 팬트리+장식장) | | | 10,300,000 | 1,030,000 | 1,030,000 | 8,240,000 | |
| | | | | 프리미엄 다이닝(기존 알파룸 변경, 대형아일랜드+홈바장+고급형 주방가구) | | | 20,500,000 | 2,050,000 | 2,050,000 | 16,400,000 | |
| | 84B | 현관 | 택1 | 현관 중문 | 3연동 수동 | 1,480,000 | 148,000 | 148,000 | 1,184,000 | | |
| | | | | | 3연동 자동 | 2,560,000 | 256,000 | 256,000 | 2,048,000 | | |
| | | | 현관 고급화 : 가구마감 고급화 + 하부조명 + 시트판넬 | | | | | 2,460,000 | 246,000 | 246,000 | 1,968,000 |
| | | 침실 | 택1 | 침실2/3 | 불박이장(1개소) | 1,620,000 | 162,000 | 162,000 | 1,296,000 | | |
| | | | | 침실2-3 | 룸인룸(불박이장(파우더포함)+3연동 슬라이딩 도어) | 4,570,000 | 457,000 | 457,000 | 3,656,000 | | |
| 침실1 : 와이드 드레스룸(벽판넬형드레스룸+슬라이딩도어) | | | | | 5,880,000 | 588,000 | 588,000 | 4,704,000 | | | |
| 101A | 현관 | 택1 | 현관 중문 | 3연동 수동 | 1,480,000 | 148,000 | 148,000 | 1,184,000 | | | |
| | | | | 3연동 자동 | 2,560,000 | 256,000 | 256,000 | 2,048,000 | | | |
| | | 현관 고급화 : 가구마감 고급화 + 하부조명 + 시트판넬 | | | | | 2,540,000 | 254,000 | 254,000 | 2,032,000 | |

| | | | | | | | | | | | |
|---------------------------------|---------------------------------|------------------------------------|--|------------------------------------|--|------------|------------|-----------|------------|-----------|--|
| | | 침실 | 택1 | 침실2/3 | 불박이장(1개소) | 1,610,000 | 161,000 | 161,000 | 1,288,000 | | |
| | | | | | 불박이장(스터디형) | 3,460,000 | 346,000 | 346,000 | 2,768,000 | | |
| | | | | 침실2-3 룸인룸(불박이장(파우더포함)+3연동 슬라이딩 도어) | 4,600,000 | 460,000 | 460,000 | 3,680,000 | | | |
| | | | 택1 | 침실1 | 불박이장 고급화 | 4,450,000 | 445,000 | 445,000 | 3,560,000 | | |
| | | | | | 불박이장 | 2,760,000 | 276,000 | 276,000 | 2,208,000 | | |
| | | 침실1 : 와이드 드레스룸(벽판넬형드레스룸+슬라이딩도어) | 5,700,000 | 570,000 | 570,000 | 4,560,000 | | | | | |
| | | 알파룸 | 택1 | | 와이드 다이닝(기존 알파룸 변경, 팬트리+장식장) | 12,100,000 | 1,210,000 | 1,210,000 | 9,680,000 | | |
| | | | | | 프리미엄 다이닝(기존 알파룸 변경, 대형아일랜드+홈바장+고급형 주방가구) | 20,700,000 | 2,070,000 | 2,070,000 | 16,560,000 | | |
| | | 101C | 현관 | 택1 | 현관 중문 | 3연동 수동 | 1,480,000 | 148,000 | 148,000 | 1,184,000 | |
| | | | | | | 3연동 자동 | 2,560,000 | 256,000 | 256,000 | 2,048,000 | |
| 현관 고급화 : 가구마감 고급화 + 하부조명 + 시트판넬 | 2,560,000 | | | | | 256,000 | 256,000 | 2,048,000 | | | |
| 침실 | 택1 | | 침실2/3 | 불박이장(1개소) | 1,540,000 | 154,000 | 154,000 | 1,232,000 | | | |
| | | | | 불박이장(스터디형) | 3,460,000 | 346,000 | 346,000 | 2,768,000 | | | |
| | | | 침실2-3 룸인룸(불박이장(파우더포함)+3연동 슬라이딩 도어) | 4,800,000 | 480,000 | 480,000 | 3,840,000 | | | | |
| | 침실1 : 와이드 드레스룸(벽판넬형드레스룸+슬라이딩도어) | | 5,800,000 | 580,000 | 580,000 | 4,640,000 | | | | | |
| | 라운지 알파룸(슬라이딩 도어+벽체) | | 2,000,000 | 200,000 | 200,000 | 1,600,000 | | | | | |
| 스토리지 알파룸(벽판넬형드레스룸+슬라이딩 도어) | 8,300,000 | | 830,000 | 830,000 | 6,640,000 | | | | | | |
| 151P | 현관 | | 택1 | 현관 중문 | 3연동 수동 | 1,760,000 | 176,000 | 176,000 | 1,408,000 | | |
| | | 3연동 자동 | | | 2,970,000 | 297,000 | 297,000 | 2,376,000 | | | |
| | | 현관 고급화 : 가구마감 고급화 + 하부조명 + 시트판넬 | | | 3,160,000 | 316,000 | 316,000 | 2,528,000 | | | |
| | 침실 | 택1 | 침실2/3 | 불박이장(1개소) | 1,690,000 | 169,000 | 169,000 | 1,352,000 | | | |
| | | | | 불박이장(스터디형) | 3,530,000 | 353,000 | 353,000 | 2,824,000 | | | |
| | | | 침실2-3 룸인룸(불박이장(파우더포함)+3연동 슬라이딩 도어) | 4,540,000 | 454,000 | 454,000 | 3,632,000 | | | | |
| | | 침실1 | 불박이장 고급화 | 5,630,000 | 563,000 | 563,000 | 4,504,000 | | | | |
| | | | 불박이장 | 3,780,000 | 378,000 | 378,000 | 3,024,000 | | | | |
| | 침실1 : 와이드 드레스룸(벽판넬형드레스룸+슬라이딩도어) | 6,050,000 | 605,000 | 605,000 | 4,840,000 | | | | | | |
| | 와이드 드레스룸 (침실4, 펜트 한정) | 5,590,000 | 559,000 | 559,000 | 4,472,000 | | | | | | |
| 알파룸 | 택1 | | 와이드 다이닝(기존 알파룸 변경, 팬트리+장식장) | 11,060,000 | 1,106,000 | 1,106,000 | 8,848,000 | | | | |
| | | | 프리미엄 다이닝(기존 알파룸 변경, 대형아일랜드+홈바장+고급형 주방가구) | 20,620,000 | 2,062,000 | 2,062,000 | 16,496,000 | | | | |
| 주방 | | | 주방 팬트리 (도어+시스템가구) | 1,000,000 | 100,000 | 100,000 | 800,000 | | | | |
| 170P | 현관 | 택1 | 현관 중문 | 3연동 수동 | 1,760,000 | 176,000 | 176,000 | 1,408,000 | | | |
| | | | | 3연동 자동 | 2,970,000 | 297,000 | 297,000 | 2,376,000 | | | |
| | | | | 현관 고급화 : 가구마감 고급화 + 하부조명 + 시트판넬 | 3,230,000 | 323,000 | 323,000 | 2,584,000 | | | |
| | 침실 | 택1 | 침실2/3 | 불박이장(1개소) | 2,010,000 | 201,000 | 201,000 | 1,608,000 | | | |
| | | | | 불박이장(스터디형) | 3,830,000 | 383,000 | 383,000 | 3,064,000 | | | |
| | | 침실2-3 룸인룸(불박이장(파우더포함)+3연동 슬라이딩 도어) | 4,970,000 | 497,000 | 497,000 | 3,976,000 | | | | | |
| 택1 | 침실1 | 불박이장 고급화 | 4,960,000 | 496,000 | 496,000 | 3,968,000 | | | | | |
| | | 불박이장 | 3,110,000 | 311,000 | 311,000 | 2,488,000 | | | | | |

| | | | | | | | | | |
|----|------------------|---------------------------------|--|-----------|------------|-----------|-----------|------------|----------------------------------|
| | | 침실1 : 와이드 드레스룸(벽판넬형드레스룸+슬라이딩도어) | | 6,020,000 | 602,000 | 602,000 | 4,816,000 | | |
| | | 와이드 드레스룸 (침실4, 펜트 한정) | | 5,550,000 | 555,000 | 555,000 | 4,440,000 | | |
| | 알파룸 | 택1 | 와이드 다이닝(기존 알파룸 변경, 팬트리+장식장) | | 11,830,000 | 1,183,000 | 1,183,000 | 9,464,000 | |
| | | | 프리미엄 다이닝(기존 알파룸 변경, 대형아일랜드+홈바장+고급형 주방가구) | | 22,560,000 | 2,256,000 | 2,256,000 | 18,048,000 | |
| | 주방 | 주방 팬트리(도어+시스템가구) | | | 1,370,000 | 137,000 | 137,000 | 1,096,000 | 와이드 다이닝 프리미엄 다이닝 선택시 선택 불가 |
| 복도 | 복도 팬트리(도어+시스템가구) | | | 1,580,000 | 158,000 | 158,000 | 1,264,000 | | |

(5) 조명특화

| 구분 | 주택형 (약식표기) | 위치 | 품목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비고 |
|----------|---------------|------|--|-----------|----------|------------|-----------|----|
| | | | | | 계약시 | 2025.01.20 | 입주지정기간 | |
| 조명 특화 | 84A | 조명특화 | 안방특화조명+거실 리니어조명(우물천장) +주방특화조명+13인치월패드 | 5,020,000 | 502,000 | 502,000 | 4,016,000 | |
| | 84B | 조명특화 | 안방특화조명+거실 리니어조명(우물천장) +주방특화조명+13인치월패드 | 5,020,000 | 502,000 | 502,000 | 4,016,000 | |
| | 101A | 조명특화 | 안방특화조명+거실 리니어조명(우물천장) +주방특화조명+13인치월패드 | 5,170,000 | 517,000 | 517,000 | 4,136,000 | |
| | 101C | 조명특화 | 안방특화조명+거실 리니어조명(우물천장) +주방특화조명+13인치월패드 | 5,420,000 | 542,000 | 542,000 | 4,336,000 | |
| | 151P | 조명특화 | 안방특화조명+거실 리니어조명(우물천장) +주방특화조명+13인치월패드 | 5,440,000 | 544,000 | 544,000 | 4,352,000 | |
| | 170P | 조명특화 | 안방특화조명+거실 리니어조명(우물천장) +주방특화조명+13인치월패드 | 6,200,000 | 620,000 | 620,000 | 4,960,000 | |

- 거실+주방+복도의 바닥 마감재 유상옵션 선택 시 바닥에 물기 등이 묻어있을 경우 미끄러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제품 및 줄눈 등의 오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바닥 타일의 시공은 계약자가 임의로 시공위치 지정이 불가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타일의 패턴이 일정하지 않아 본공사 시 견본주택과 타일패턴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타일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타사제품 포함)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일과 강마루 또는 이질재가 만나는 부위는 견본주택과 다르게 별도의 줄눈재가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시공은 계약자가 임의로 시공 위치 지정 및 마감재 선택이 불가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품목별 일괄시공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설비 및 인테리어 설계상 연관되어 있어 개별 아이템별 신청이 불가함)
- 유상 옵션(프리미엄 다이닝 선택시 적용 품목 - 세라믹타일(상판/벽체), 대형 아일랜드(하부 유리장식장/매립 콘서트), 홈파(전동 플랩장 포함), 주방가구 고급화(상부장 유리+키큰장/홈바 경면Pet+상/하부 간접조명), 다이닝 공간(우물천장+간접조명), 독립형 후두+3구인덕선이 설치 됩니다.
- 일부 무상선택품목(84C, 84D, 101C 타입, 복도-침실3 통합형) 미선택시에는 기본형으로 설치됩니다.
- 천장/조명특화 옵션 선택시 기본조명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조명특화 미 선택시 기본 월패드(10인치)가 설치 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 금액 납부 계좌

| 구분 | 금융기관명 | 납부계좌 | 예금주 |
|-----------|---------|-----------------------|-----------|
| 추가 선택품목금액 | 계약금 | 신한은행 | 현대건설 주식회사 |
| | 중도금, 잔금 | 계약체결시 세대별로 개별 가상계좌 부여 | |

- 추가 선택품목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사업주체와 계약자 각각 납부)으로 수입인지(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15만원))를 계약서 작성시점에 계약서에 첨부해야 하며, 해당수입인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 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 상기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견본주택에서 현금 또는 수표 수납 및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 납부계좌는 아파트 공급금액, 발코니 확장 금액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입금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신한은행 / 140-014-777820 / 현대건설(주))로 관리됩니다.
- 세대별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시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입금 시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101동 101호 : 서명란에 "1010101홍길동"이라고 정확히 기재)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통합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계약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시점 이후 시공을 위하여 소요자재를 선 발주를 해야 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임)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등급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 등의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선택시 사업주체가 선정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 대금에 대하여 공급주체는 소비자 상대 업종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며, 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3조1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사항이고,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옵션계약도 자동으로 해제 또는 취소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계약 전 위치 확인 요망)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스프링클러, 환기구, 등기구, 배선기구, 스위치 등의 위치, 수량, 종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본 아파트 여건에 맞게 설치되는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선택하시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상세내용은 본 공고문 표기와 설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필히 확인하시고 설명을 들으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타입별 추가 선택품목의 상품구성, 적용위치, 형태 등이 상이하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타입의 품목은 설치 불가능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공사 시작 이후 자재발주 및 시공상의 문제로 계약변경 및 해제가 불가하며, 해지 시 위약금과 원상회복비용(실손해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 세대 여건에 따라 일부 우물천장 리니어 조명, 픽처레일 일체형 조명에는 분절라인이 적용됩니다.

※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확인 이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 유의사항

| 구분 | 내용 |
|------|---|
| 공통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 내 개설된 도로는 입주자의 편의를 고려해서 확보된 도로로 그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과 비용은 입주자에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제반 내용 및 건립된 건본주택은 사업계획승인 변경 포함,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 사유가 없습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시행위탁사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 납부하며,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분양계약자가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 (☎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입처-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https://www.e-revenuestamp.or.kr)_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구매금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15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인지세 납부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재된 혼합주택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 및 임대사업자로 구성된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하고자 하며, 계약자는 이를 위한 관리규약의 제정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공동대표회의의 구성, 권한, 운영 등은 추후 공동주택관리법 기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의 귀책 사유가 아닌 여하한 사유로 공동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한 경우 계약자들은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용도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건물의 계약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인허가 과정, 단수 정리, 공부정리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정산하기로 한다. 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을 하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타입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타입별 공급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확정 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복리시설 면적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의 비주거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주택법에 의거 건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평면도 및 시방서는 건본주택에 열람 가능토록 비치되어 있습니다. ■ 건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탑승위치 등)은 건본주택에 비치된 사업승인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 시공은 사용승인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는 준공 후 입주자의 원활한 입주 업무 지원, 신속한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일정기간(입주업무는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최대 5개월, 하자 보수 업무는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최대 27개월)동안 입주지원센터(가칭) 및 현장A/S센터(가칭)로 사용하며, 계약자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일체비용(임대료 등) 및 시설 이전·축소 등을 요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합니다. ■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자연재해나 기상이변(장마, 폭우, 폭설 등), 전염병 발생, 문화재발굴, 전쟁, 내란,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다는 사실과,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없고 지체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으며, 수분양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용검사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지명, 단지내 시설명칭, 동·호수의 표기 등은 지자체 승인 관련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 및 영상물 등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하며,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 맨홀 등 인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사업자와 협의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는 공사 시행 중 “계약자”의 위 표시재산을 품질관리 등을 위한 샘플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샘플하우스 사용 이후 원상복구를 하고 “계약자”에게 인도하기로 합니다.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합니다.
- 향후 학교 배정 방법은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 : 본 아파트 해당 있음
- 본 단지에 입주하는 학생은 주택개발상황 및 입주시기, 교육부 정책 등을 기준으로 대전시교육청(행정과)의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배치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전광역시 교육청 행정과)

■ 설계 유의사항

| 구분 | 내용 |
|--------------------|---|
| <p>공통 유의사항</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 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소음·진동 등) 및 사생활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주택법」 제60조제3항에 의하여 견본주택 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평면도와 시방서, 마감자재 목록표(홈페이지 확인가능)를 비치하오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 시 평면도, 배치도, 설계도서 등 현황관계를 직접 확인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H-사일런스 홈 시스템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1층(필로티상부세대 포함) 바닥에는 시공되지 않습니다. ■ 환기를 위한 연도는 추후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경면적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교통영향평가 및 관계기관 협의의 결과에 따라 도로 또는 대지경계 선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별도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을 양지하시어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급면적 표시방법을 중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 단위인 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평형 환산 방법 : 주택형별면적(m²) x 0.3025)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타지역, 타사 또는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 등을 본 아파트와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시설 명칭 및 동표기 등은 관계기관 심의결과 및 인허가 사항에 따라 입주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의 사양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인지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서 및 관련도면에 첨부된 자재 및 공법은 실 시공시 현장 여건 및 자재수급 여부에 따라 동급수준 성능 또는 동급 수준 자재 및 공법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는 준공 후 신속한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일정기간(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최대 27개월)동안 ‘현장AS센터(가칭)’로 사용하며, 계약자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시설 사용에 대한 일체 비용(임대료 등) 및 시설 이전·축소 등을 요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 시공 중 문화재 발굴이 필요한 유적출토 시 문화재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으로 인해 입주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체보상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 시공 중 천재지변, 전염병,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될 수 없으며 입주지원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세대 당 대지지분은 기반시설 및 대지면적 확정 측량에 따른 대지면적이 증감되어 세대 당 대지지분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기반시설공사 준공 지연 등으로 대지의 이전등기가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고, 확정 측량에 따라 대지 지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카달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등은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에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 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기반시설 및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 공사 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현재의 계획 및 예정 사항으로 향후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홈페이지, 카달로그, 견본주택, 사인물 등 각종 인쇄물 및 사인물에 삽입된 광역위치도, 교통망,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이미지 컷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의 VR 동영상 및 카달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인테리어 사진은 견본주택 및 사전에 촬영하여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용품이 포함된 것으로, 계약 전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전시품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개관 전 사전에 이루어진 광고·홍보 상 부대시설 및 기타사항 등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축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실내수영장, 키즈풀, 사우나, 어린이집, 클럽하우스, H-아이숲, H-위드펫,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피트니스, 작은도서관, 독서실, 다함께돌봄센터, 게스트하우스 등)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 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 및 분양홍보자료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및 홍보물상 표현된 지구 내 학교, 공원, 도로계획, 지구경계 등은 관계기관의 자료를 참고한 것으로 향후 실시계획 및 공사 중 변경 또는 연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 시공 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등급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분양홍보물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홍보물 등에 기재된 자재 중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등급 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물 등에 기재된 자재 중 성능향상을 위한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인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인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하고,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에 따라 부동산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인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거소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인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고자 하는 등·호수가 동일 타입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가격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관계법령과 상이할 경우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입주절차

- 계약자는 공급금액 및 연체료 등 일체의 납부를 기일 내에 완납하고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요구한 제반 서류를 제출한 후 입주일이 명시된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시 관리예치금(선수관리비)을 생활지원센터에 납부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입주, 잔금완납 및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단,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시에는 입주증 발급일 또는 키 수령일 중 빠른 날의 다음 날로부터 관리비를 부담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일은 공사 진행결과에 따라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도래된 중도금과 잔금은 실입주일 이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는 준공 후 입주자의 원활한 입주 업무 지원을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일정기간(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최대 5개월) 동안 입주지원센터(가칭)로 사용하며, 계약자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시설 사용에 대한 일체 비용(임대료 등) 및 시설 이전·축소 등을 요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 계약자는 동별 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에도 입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계약 표제부의 공급금액 총액의 90%를 납부하고 입주하여야 하고, 나머지 10%는 사용검사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계약자가 해당 기간 내 나머지 10%의 금액을 미 납부하였을 경우 본 계약 제5조에 따른 연체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계약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미납 금액에 대해 계약자의 재산에 대하여 근저당, 압류, 가압류 등 법적 제한조치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본항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 계약일반

- 계약자가 중도금대출을 받은 경우, 계약자는 소유권 이전시 대출금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 및 등기절차에 협조하여야 하고, 해당 분양주택의 담보평가결과 담보부족분이 발생할 때에는 담보부족분에 대한 중도금 대출금액을 계약자가 책임지고 대출금융기관에 상환해야 합니다.
- 청약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단지모형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그 차이가 현저하여 계약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 기준에 따릅니다.
-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사업주체와 계약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법원으로 합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 및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입주이후에 성능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공사에게 품질 또는 성능미달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입주 이후 "수분양자(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저하 발생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합니다.
- 외국인(법인·단체포함)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 가.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구입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취득신고를 합니다. (단, 공급계약이나, 매매는 부동산거래신고로 갈음하고 중여, 교환 등만 해당합니다.)
 - 나. 외국인이 상속 또는 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신고를 합니다.
 - 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를 합니다.
 - 라.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마치고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공급금액 납부안내 등을 위한 휴대폰문자서비스(SMS) 수신에 동의하며, 계약자가 사업주체에게 개인정보(연락처) 변동 미고지 및 계약자의 휴대폰 수신상태 문제로 인한 SMS미수신의 책임은 사업주체가 지지 않습니다.

단지건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설계일반

- 견본주택에 전시되는 모형 및 이미지(조감도 등)상 표현된 단지명 및 BI는 실 시공시 현장 상황에 따라 위치, 개소수, 컬러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으며 조명설계에 따라 일부 세대에 서는 야간에 눈부심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계약 시 제시된 공급안내서를 포함한 조감도, 세대평면도 등의 각종 인쇄물·CG(조감도, 투시도) 및 면적, 치수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개소, 위치, 규모, 외관 및 색채는 측량결과, 각종 심의 결과 (건축위원회 건축, 경관, 교통 심의 등) 불합리한 설계의 개선 및 표현 오류, 오기 등으로 정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구조·성능·제품의 사양은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분양광고 홍보물 및 분양용 모형과 최종 사업계획승인 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의 설계오류 정정,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모집공고 이후 관계법령이 허용 하는 한도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허가를 진행합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홍보사인물, 연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 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및 유지 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용승인도서에 따라 시공됨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합니다.
- 공장생산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합니다.
- 천연자재(석재, 무늬목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하며, 천연석으로 시공 되어 있 는 경우 본 시공시 천연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나 자연적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 맨홀 등 인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사업자와 협의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특기시방서에 별도의 시공기준이 없는 경우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임한 감리가 승인한 시공계획서 또는 승인자재 제조사의 시공기준에 따릅니다.
- 내화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종의 경우 인증표시는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임한 감리가 승인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으로 같음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임의해체 및 부속물(디지털 도어록/말발굽 등)의 임의설치/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시공사에게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합니다.
-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사용승인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호실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 중 사업계획승인 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계획승인 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 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청약 전 사업부지 현장 (주변현황 포함) 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지상돌출물, 지상 쓰레기 관련시설, 단지 내 도로 등) 및 단지 주변현황 (인접 APT단지, 인접 주택단지 (상가주택 포함), 주변상가, 종교시설 (교 회 등), 학교, 공원, 단지외부도로, 방음터널(지하차도), 인접 개발계획(서남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저류지 등) 에 의한 사항은 청약 전 반드시 수분양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분양 후 도안지구 및 서남부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단지 주변의 개발 등으로 인한 주변시설 (도시계획 시설 포함) 이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소방법에 의한 에어매트 설치구간은 건축 돌출물(동출입구, 캐노피 등) 설치가 불가합니다.
-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PIT 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 자연지반면적, 인공지반 녹지면적 등은 축소 또는 증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사 가 인·허가를 진행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충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 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사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도로와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사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주변현황 / 단지배치

- 각종 광고 및 홍보물(견본주택, 카탈로그,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에 표시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 공공청사, 학교, 지하철,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공공용지 등)의 조성계획(예정사항)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시행주체 및 국가정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 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변에 인접하여 북측 50m, 서측 27.5~30.5m 도로가 개설 예정에 있으며, 이로 인하여 도로에 인접한 세대의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입주후에도 주변 건축물 및 도로공사가 진행될 수 있어 먼지, 소음 발생 및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 타 도시개발사업 지구(도안2-10지구 등)의 사업 시행 시기 차이로 인한 대로1-38호선 등 사업지 외부 연결도로의 미개설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합니다.
- 단지 북측변 도로와 당 사업지 사이에는 녹지대(약 10m폭)가 설치되며, 녹지대로부터 건축한계선(6m)을 이격하여 주동이 배치되나 저층부 세대는 도로변으로 인해 소음, 프라이버시 등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서측에 서남부스포츠타운 등의 개발 예정지가 있어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빛 반사,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하기 사항에 따라 일조·조망·사생활 침해, 소음·빛 반사·분진·냄새·진동 발생 등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등의 설치로 인한 일부 일조, 조망 침해 및 가로등, 야간 조명, 단지 내 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단지내 레벨차이, 인접세대 등으로 인해 소음, 빛 반사,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 상가, 도로, 방음터널(지하차도), 통행로 인접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빛 반사, 일조·조망·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상 쓰레기 분리수거함, 재활용 창고, 급배기시설(환기구 등),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에어컨 실외기 및 주방배기구 인접으로 인한 소음, 냄새 및 해충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물은 상세설계에 의하여 위치/크기/형태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 옥상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소방설비(수조 등)가 설치될 수 있으며, 동작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높이가 60m 초과시에는 지면에서 건축물의 높이 5분의4가 되는 지점에 돌침형피뢰침이 설치되어 건물외벽(특정세대 발코니얌) 미관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변 건축물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옹벽·석축, 단지 내 휴게공간·필로티·어린이놀이터·드라이에어리어(D/A)·채광창(Top Light), 자전거보관소, 옥외엘리베이터, 옥외계단, 에어매트 설치 공간, 기타 부대시설 등의 설치로 일조·조망·사생활권 침해, 소음 발생, 미세한 진동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계획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 위치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따라 소음 발생, 일조·조망·사생활권 침해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단지내 시설물에 관한 안내 사항
 - 쓰레기분리수거함 : 아파트 각 동 및 근생 주변 (18개소)
 - 재활용창고 : 101동&109동 지하1층 (2개소)
 - 급배기시설 :주차장 상부, 부대시설 주변, 각 동 또는 각 동 주변
 - 소방설비(수조 등) : 106동 옥상
 - 실외기설치공간: 근생 옥상, 각 부대시설 또는 부대시설에 근접한 아파트 동주변
- ※ 상기사항은 청약 및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안내 사항으로써 최종 위치/크기/형태 등은 상세계획에 의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해당 시설물에 인접한 동에서는 소음, 냄새·조망·사생활권 침해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접해있거나 단지주변에 있는 시설(도로, 수변공원, 보행로, 학교, 방음터널(지하차도), 미디어 아트월 등)은 시공범위가 아니며, 해당 시설 및 지형은 상위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변경된 계획레벨에 따라 실 시공시 단지레벨 및 길이, 형태, 종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공범위 외 기반시설의 세부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지구단위계획 등 상위계획에 의해 설치되는 공지 및 수변공원 등은 외부인이 이용 및 통행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없는 사항임을 계약자는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합니다.
- 인허가 과정에서 104동 인접한 수변공원 벽면에는 미디어 아트월이 계획되어 있으나 세부사항은 미확정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설치범위, 형태, 크기 등은 변경될 수 있고(해당부위 산벽(옹벽)형태도 변경될 수 있음),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 해야함을 인지하고 계약합니다. (해당 시설은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시공범위가 아님)
- 어린이놀이터의 놀이시설물 및 파고라 등의 크기, 형태는 추후 실시설계 진행에 따라 변형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진입을 위한 램프의 마감재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일부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서 협의 결과에 따라 비상차량동선 및 정차구간, 지상 및 옥상층의 에어매트 설치구간 등 위치 및 규격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에어매트 구간에는 교목 및 관목식재는 배제되며, 소방서 점검시 사다리차 전개에 문제가 되는 경우 일부 수목에 대해선 상부 가지치기 또는 재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옹벽 설치는 현장여건에 맞게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상황에 따라 일부 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고, 이를 어기고 사다리차량을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합니다.

□ 아파트주동 / 공용부

- 하기 사항에 따라 일조·조망·사생활 침해, 소음·빛 반사·분진·냄새·진동 발생 등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건물 외부장식물, 옥상구조물, 문주 및 동출입구에 의한 조망권 제한, 돌출부에 의한 그늘짐 등의 일조 침해 및 빛반사로 인한 빛 반사가 및 소음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램프 / 기계실/전기실/발전기실/제연웬룸/우수조/정화조/정화조 배기탑/쓰레기집하시설/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의 탈취기, 송풍기, 실외기 등에 인접한 세대의 소음, 냄새, 진동, 수증기, 매연 발생 및 돌출물/시설물(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태양집광판, 피리침, 커튼월록 유리 등)등으로 인한 일조, 빛 반사, 조망간섭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V 운행에 따른 소음, 진동 등 발생으로 인한 환경권 침해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의 문주는 형태 및 디자인, 배치, 규모, 마감재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아파트 및 부대시설, 각종 시설물등의 색채, 입면 디자인, 마감재 등은 건축, 경관 심의 결과에 따라 인허가 사항 범위내에서 계약자의 동의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펜트층 세대는 옥상 구조물의 구조 부재로 인한 조망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세대의 경우 석재 마감으로 인해 외부 창호와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면 장식물 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입면특화를 위하여 외부창호 주변에 수직/수평 돌출장식물, 몰딩 등이 설치되어 세대내 외부 조망에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입면특화를 위하여 주동 일부구간에 커튼월 록 입면이 적용되며, 본 공사시 커튼월 록 설치위치, 범위, 고정 방식, 유리모듈, 색상, 디자인 등 세부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커튼월 록 구간에 설치되는 일부세대 창호의 방충망은 외부 입면을 고려하여 커튼월 록이 적용되지 않는 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입면특화를 위하여 설치되는 커튼월 록으로 인하여 마주보는 일부 세대의 경우 빛반사 등에 따른 눈부심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간거리가 짧은 일부 라인(101동 1호, 102동 3호, 103동 1호, 104동 4호) 거실창호에 한해 사생활보호필름이 설치되어, 미설치 세대 대비 외부 입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으며,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 공동주택 주차장은 각 동별 주차공간의 분포 및 위치에 따라 이용 시 거리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연결통로의 길이와 형태는 동별로 상이하다. 또한, 경차/장애인지원용/확장형주차/전기차/일반 주차대수 등의 분포는 일부 동에 편중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배치 및 사용 편의성을 충분히 확인 후 계약 바랍니다.
- 계약자는 단지 커뮤니티(피트니스, 독서실 등) 설계 및 제공되는 시설류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였으며,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 합니다.
- 옥탑, 옥상 및 지하주차장 신축준은 공사계획에 따라 미시공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시 해당부위 백업재 및 코킹은 시공하지 않습니다.
- 당 현장 옥상 상부에는 태양광 패널이 다수 계획되며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수량등)은 시공 단계에 최종 확정됩니다. 시야 간섭으로 인한 조망권 침해, 소음, 냄새, 그늘음, 진동 등의 환경권침해 및 빛반사로 인한 빛 반사 등이 발생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실 시공시 연돌효과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공용부 창호의 실시 위치, 개소,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외 공용부에 설치되는 전기, 통신관련 시설물은 준공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통신단자함/전기분전반은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트랜치시공시 시공부위의 주차구획은 트랜치폭을 포함하며, 트랜치가 측면, 배면에 시공될 시에는 주차라인마킹은 하지 않습니다.
- 엘리베이터홀, 부대시설의 경량천장틀 시공부위에 천장틀의 처짐 등 기능상, 안전상 지장이 초래 되지 않을 경우 마이너찬넬보강은 제외합니다.
- 지하주차장은 인·허가 도서에 준해 설치되며, 해당 천장고 초과 차량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지하 1층 - 주차장 차로 높이 2.7m(주차공간 2.1m 이상) - 출입구 높이 2.7m
지하 2층 - 주차장 차로 높이 2.3m(주차공간 2.1m 이상) - 출입구 높이 2.3m
- EPS, TPS, AD/PD, PIT, ST, AV 등의 내부벽체(조적벽체, 콘크리트벽체 등)는 초벌미장 시공을 제외하며, 해당구간의 조적벽체 미장은 E/V 홀 또는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만 시공합니다.
- 시멘트 몰탈 마무리두께는 15mm 내외로 하며 바탕면에 따라 오차범위 5mm를 포함합니다.
- 창호는 공사여건에 따라 ±50mm범위 내에서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창의 개폐여부 및 방식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 및 크기는 각동 코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옥외보안등 및 지하, 지상층 CCTV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기능과 감시 범위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대지 인접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 세대에는 옥외보안등, 기타 보안시설 등에 의한 빛 반사 및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당해 건물 측면 및 옥상에 항공장애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빛 반사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 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 위치

1. 옥외안테나 설치 위치

- 옥상층 : 102동, 105동, 107동, 108동, 111동
- 지하1층 : 109동, 110동 인근 화단

2. 중계장치 설치 위치

- 옥상층 : 102동, 105동, 107동, 108동, 111동
- 지하1층 : PIT 5개소(102동, 103동, 105동, 109동, 110동)
- 공용부 등에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되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합니다.
-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한전패드 위치 등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여부가 입주자에게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에 면하거나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 운행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홀의 형태는 동별, 호수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CCTV와 주차장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의 방법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동의 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물의 발전기실에는 비상발전기가 설치 될 예정이며, 점검 등으로 인한 기기 작동 시 소음 및 진동 등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차량출입구 통행 개선을 위하여 차단기가 추가설치, 삭제, 위치이동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도로폭 확대 및 보행로폭 축소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가스배관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각종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 및 피트층을 공동 사용하며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 전기차 등의 충전시설 설치 법적 의무대상으로 지하주차장 내 충전시설 및 주차구획은 법적개소 이상 계획 하였으며, 추후 설치위치 및 개소수는 법적개소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동별 이용 가능한 대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의 배관, 케이블 및 기타설비 등이 주차장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주동 세대별 접근 거리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하기 사항에 따라 일조·조망·사생활 침해, 소음·빛 반사·본진·냄새·진동 발생 등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동 옥상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본 공사시 효율 개선 등의 사유로 설치위치, 수량, 크기, 각도, 높이, 사양 등 세부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태양광 집광판의 설치 위치에 따라 옥상에 설치되는 시설물(옥상장식물, 옥탑구조물 등)의 위치,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옥상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현장 여건에 따라 건축공법(모듈러, PC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 경관 조명에 의한 빛 반사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펜트층 세대는 옥상 구조물의 구조 부재로 인한 조망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녹지대 일부가 있음에 따라 준공 후 입주인이 유지 관리 주체가 됩니다.
-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의 주차대수는 1,724대, 세대당 1.53 : 1입니다.
- 일부 유상옵션품목은 타입별로 선택불가능한 품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슬라이딩 도어는 본공사시 시공업체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상 쓰레기 수거차량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는 단지조화 등을 고려하여 식재의 위치, 규격, 수종,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또는 시공과장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라 조경시설물의 조경선형, 포장, 조경 시설물의 색채, 형태, 재료, 위치 등도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관련 팜플렛, 인쇄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부지는 미술장식품 설치 대상지로 조경계획 및 미술장식품 디자인에 따라 설치위치 및 규모,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지하층 특성상 우기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필로티 상부 층 세대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필로티에는 추가적으로 오배수, 우수배관을 위한 공간이 추가적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 동별, 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는 세대가 일부 존재하며 수분양자는 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에는 상부 배수배관이 천정내 설치될 수 있으며,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타일류 및 천연가공석의 줄눈나누기, 마감 등을 고려하여 열패드, 세대분전함, 세대단자함, 배선기구, 보일러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타일류, 엔지니어드스톤, 천연가공석 등 마감재의 색색, 디자인, 재질단차, 코너, 마감재접합부, 패턴 등은 본 공사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수전류, 욕실 마감재재(양변기, 세면기, 휴지걸이, 수건걸이, 코너선반 등), 등의 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벽체 마감재 종류 및 두께에 따라 내부공간 면적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주방가전 미선택 시 기본형 수납공간 등으로 시공되며, 비치하는 냉장고 크기에 따라 냉장고 일부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사이즈가 줄어 들 수 있습니다.

- 가전 기기 등 설치 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과 같으며 그 보다 큰 가전 기기는 해당 공간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 신발장 또는 창고, 기타 세대 내부에 세대분전반, 세대단자함, 세대통신단자함 등이 개별 또는 통합 설치되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 기타 마감이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입주 후 개인의 사정에 따른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 품목 시공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으며, 변경 필요 시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 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커튼박스 시공 시 간섭부분의 가구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주방싱크장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장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됩니다.
- 주방 렌지후드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며 렌지후드 사양 및 상부장 수납공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선품목(가구, 가전, 평면선택, 마감 등)은 반드시 사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살균정환기시스템 유상옵선 선택 시, 전열교환기, 천장형 공기정정기 내부에는 광플라즈마 램프가 설치되며 램프는 연 1회 교체를 권장합니다. 사용정도에 따라 교체주기는 다소 상이 할 수 있습니다. 램프의 구입 및 교체는 입주자분입니다.
- 현관에어샤워 시스템은 유상옵선 품목이며 장비 작동에 의해 실내로 먼지의 유입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현관 가구의 수납공간이 일부 제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에어샤워 시스템 옵션선택에 따라서 조명의 형태 및 수량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에어컨은 유상옵선품목으로 미선택 시 전 평형에 냉매배관 2개소(거실 스탠드형 기준 1개소, 안방 벽걸이형 기준 1개소)가 제공되며, 천장형 에어컨을 위한 냉매배관 및 드레인 배관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위치는 등기구 및 단열재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온도조절기의 냉방제어기능은 천장형 에어컨 유상옵선품목을 선택할 경우에만 제공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선택과 개별 에어컨 설치 등으로 인해 실외기실 내부에 실외기를 2단으로 설치할 경우 냉방효율 저하, 실외기 과열로 인한 실외기 작동 중단, 실외기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실외기용 차단기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설치가 불가 합니다.
- 단위세대의 욕실에는 바닥 난방이 적용되고 배관 간격은 침실과 상이하며, 별도의 난방조절기는 설치되지 않고 평면에 따라 거실 및 인근 침실에서 통합 제어됩니다.
(난방 제외 구간 : 욕조 하부, 샤워실)
- 세대 내 우물천장은 천장 내 설비배관으로 인하여 천장과 및 길이, 크기,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커튼박스 깊이나 길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욕실 천장에는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를 설치 할 예정이며,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 사양,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싱크대하부 난방 온수분배기에 연결된 노출 온수 파이프는 보온시공을 하지 않으며, 주방 하부장 등 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에어컨 설치 시 실외기 설치 위치는 실외기실에 계획되어 있으며 실외기실 출입문과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환기 설비는 가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세대간 소음 발생량이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 난간은 확장형 기준이며,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 시 일부 구간에 난간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욕실, 현관 등은 바닥 단차설계가 적용되며, 출입문 개폐 시 신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 측벽, 세대간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 돌출 및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 시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방 발코니, 다용도실 등 비확장 발코니 중 외기에 면하는 일부 벽체는 결로방지용 단열재가 설치되어 실제 발코니 사용면적이 축소될 수 있으며, 벽면 및 천장에 단열 설치로 인한 단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 사양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 시 주방 발코니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및 덕트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발코니 확장/비확장형 선택 및 옵션형 평면 선택 유/무에 따라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수량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욕실천정내부 벽체, 다용도실 벽체, 실외기실 벽체, 주방 가구 및 벽체에 PD내부 점검을 위한 내시경점검구가 설치 될 수 있으며 마감을 위한 덮개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상부세대가 발코니 비확장형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장 및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시공시 단위세대 내부에 결로방지를 위하여 일부 천장 및 벽체에 단열재가 설치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실내습도 및 사용자의 생활 환경이나 습관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창 표면 등 창호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발코니)은 본 공사시 마감재 설치 등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중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됩니다.
- 각 세대(비확장형 세대 포함)의 발코니 중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자의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의에 의거 계약함을 확인합니다.
- 본 공사시 코킹 시공 부위 및 색상은 달라질 수 있으며, 욕실 천정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 반침장, 안방 불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거울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에는 마루, 타일류, 엔지니어드스톤, 천연가공석,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으며, 주방가구의 경우 후면/천장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 마감상황(타일류 및 천연가공석의 줄눈나누기, 도배와 가구 설치내용 등)과 제품의 품질수준 유지를 고려하여 월패드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유상옵선품목인 슬라이딩도어와 가구 및 벽체와의 간격은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슬라이딩도어는 실내창호로써 기밀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유상옵선품목은 주택형별 사양이 다르므로, 해당 주택형의 형태를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공사시 형태, 재질, 사양 등이 동급 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주방, 복도 등 바닥마감재 옵선택시 바닥에 물기등이 묻어 있을 경우 미끄러움이 발생할수 있으며, 제품 및 줄눈등의 오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타일과 강마루 또는 이질재가 만나는 부위는 본공사시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별도의 줄눈재가 시공될수 있습니다.
- 유상옵선품목 중 거실/복도 아트월, 주방상판/주방벽체 세라믹타일은 본공사시 운반 및 품질확보를 위해 분절위치가 변경될수 있으며 추가분절되어 시공될수 있으니 계약전 명확히 인지 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현관중문 유상옵선택시 현관중문 슬라이딩 도어와 만나는 벽체, 천장, 가구 등에 따라 본공사시 사이즈 및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 유상옵선택시 미선택시 냉장고장 및 김치냉장고장크기 사전확인후 가지고 계신 가전기기 사이즈가 못들어갈수 있으니 확인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바닥은 물흐름 구배로 인하여 턱 높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싱크대 하부의 가구 디자인은 설비기기가 설치됨에 따라 견본주택 사양과 내부 폭 가구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라믹타일 옵선택시 거실/복도 아트월, 주방상판, 주방벽체 등에 적용시 자재특성에 따라 본공사시 패턴불일치, 분절라인 조정 등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현관문 및 그외 철재/PD도어류의 도장, 색상, 디자인 및 세부 내용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거울의 경우 보호페인트가 입혀졌더라도, 자재특성(은 성분)상 산성, 알카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며,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바 욕실 환기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임의로 전유세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수행하여 하자 또는 성능불량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등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으며,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침실, 거실, 주방의 조명스위치는 취침 등을 고려하여 마지막 소등시 초간 지연 후 소등되는 조명스위치가 설치됩니다.
- 세대 내 유리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위치별로 특성이 다른 유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각종 도어 및 창호류의 사양(유리사양, 창틀 디자인, 손잡이, 창호크기, 루버형태, 재질, 색상, 제조사, 열림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 여건,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등의 사유로 조명기구, 월패드, 분전함, 콘센트, 소방설비 및 배선기구류 등이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디자인, 사양, 개수, 설치위치 등이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갤러리(루버) 창 프레임 및 갤러리의 색상은 외부 색채 디자인에 따라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84B, 151P 타입의 경우 보일러가 침실에 면한 발코니에 설치되며, 보일러 가동시 소음이나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전열교환 환기장치 및 덕트가 가 실외기실 천정에 노출 설치되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작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열교환 환기장치 및 덕트가 실외기/하향식피난구 설치실 천정에 노출 설치되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작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기장치에는 외부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HEPA필터가 설치되며, 필터는 연 1~2회 교체하는 것을 권장하며, 사용정도에 따라 교체주기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필터구입 및 교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냉난방겸용 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시설이며, 본 시공시 냉방전용 시스템에어컨이 유상옵선택으로 제공됩니다.
- 화장실 천장에 급수를 위한 분배기 및 상부층 배수배관이 설치 됨에 따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천장에 설치됩니다.
- 각 세대 침실 내에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이 통합형 또는 분리형으로 설치될 수 있으며, 시공과정에서 위치 및 마감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인증으로 공동현관 자동문 출입이 가능한 스마트폰 키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보조 출입키(카드형 RF키)는 세대 당 2개가 지급 됩니다.
- 스마트폰 키 및 스마트폰 자동 주차위치 저장 시스템은 스마트폰의 Bluetooth 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어야 하며, 일부 스마트폰 기기에서는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자동 주차위치 저장 시스템은 세대별 등록된 차량을 지하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 하이오티(홈네트워크) 서비스의 경우 이동통신사/포털사/제휴사의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업체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 및 사용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하이오티(홈네트워크) 가전기기 제어서비스는 하이오티 연동된 IoT가전기기를 구매하고 세대 내 무선인터넷 환경이 구축된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기 제조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

제한 및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서비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냉방기능은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선택세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하이오티(홈네트워크) 서비스는 성능 개선이나 입주 시의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플랫폼 운영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카투홈 서비스는 현대/기아차 19년 이후 생산 모델 중 카투홈 기능이 있는 차량으로 해당차량의 커넥티드서비스(블루링크, UVO, 제네시스)에 가입된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서비스는 제조사의 운영 및 요금정책에 따라 기능 및 비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됩니다.
- 스마트 주방거치대가 설치될 경우, 전원 및 통신단자용 통합콘센트가 스마트 주방거치대 후면 높이에 설치 및 후면에 전원선 및 통신케이블이 노출됩니다.
- 스마트 주방거치대는 주방 가구 유상옵션에 따라 설치되는 가구장 매립 조명과 간섭될 수 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하여 설치형태가 변경 될 수 있으니 계약전 명확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에 설치되는 배선기구(콘센트 및 스위치 등)는 본 공사시 가스배관, 가구장, 악세서리 등 평형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 수량이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으며 평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기 바랍니다.
- 전원 및 통신단자용 통합콘센트가 주방 타일면에 노출되어 설치 될 경우, 전원선 및 통신케이블이 노출됩니다.
- 세대내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장소별 색온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세대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기간사업자에게 제공 요청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각 타입에 연출되어 있는 스포트라이트, 스탠드 조명 및 펜던트는 전시용으로 실 시공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홈네트워크 설비 및 대기전력 차단 시스템유지 등에 따라 미 입주시에 일부 전기사용량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세대분전반 차단시 홈네트워크설비, 방법 및 경보 알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 스피커의 개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시공 시 각 단위세대의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그 설치위치가 결정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 보안용으로 본 공사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위 세대 내 세대분전함, 세대단자함, 세대통합분전함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월패드 및 배선기구류의 제품사양, 설치방향, 개소, 디자인 및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네트워크 설비 및 대기전력 차단 시스템유지 등에 따라 미 입주시에 일부 전기사용량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세대분전함 차단시 홈네트워크설비, 방법 및 경보 알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 주방에 설치되는 전열기구(콘센트, 스위치 등)위치 및 수량은 본 공사시 주방 가구, 쿡탑, 개수대, 악세서리 등 설치 위치에 따라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주방스마트거치대 혹은 주방TV의 전원은 해당기기 후면에 설치된 콘센트를 사용합니다.
- 옵션 선택 유/무 및 사용성 개선에 따라 온도조절기 및 조명스위치는 통합형 또는 분리형으로 적용 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안방, 침실에 설치되는 통합형 전자식스위치의 온도조절기 및 조명스위치는 동일한 색상일지라도 제조사별 제작 및 도색방식이 상이하여 서로 이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거치대는 주방 가구 유상옵션에 따라 설치되는 가구장 매립 조명과 간섭될 수 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하여 설치형태가 변경 될 수 있으니 계약전 명확히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에 가스배관, 렌지후드 환기덕트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일부 가구의 깊이가 줄어들 수 있으며,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 위쪽으로 가스 배관 등이 노출 될 수 있으며, 사용상의 문제가 없는 한 하자 사항이 아님을 인지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 주방 상부장 하부의 간접조명은 가스배관, 가스차단기등의 설치 등으로 분절, 축소 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벽체 등 시멘트 몰탈 떠붙임 공법의 뒷채움은 80%로 시공합니다.
- 발코니(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관계법령에 따라 화재 등 긴급 피난시 상부세대에서 하부세대로 하향식 피난구가 개방되고, 사다리가 내려와서 아래 세대로 피난이 되는 구조)가 설치되는 경우, 피난구의 설치 위치는 층별, 평면 유형별,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최하층 세대는 하향식 피난구 설치가 제외됩니다.
-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는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가 필요하며, 하향식 피난구 설치세대는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하여 항시 실외기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인 · 허가상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시공사가 책임지지 않으며, 또한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소음 및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에서 나오는 응축수를 별도로 배수하는 드레인온 없으므로 계약 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 신발장, 실외기실, 대피공간, 발코니, 다용도실, 주방가구 하부, 샤워부스, 욕조하부, 양변기 주변, 세면대 하부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및 제48조의3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구분 | 등급 |
|------|------------|
| 내진능력 | VII-0.224g |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등급, VII-최대지반가속도)으로 표기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 본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은 인,허가 도서에 준해 설치되며, 해당 천장고 초과 차량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주차장 차로 높이 |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
|------|-----------|-------------|
| 지하1층 | 2.7M | 2.7M |
| 지하2층 | 2.3M | 2.3M |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의무사항 | | 적용여부 |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
|-------------------|----------------------------------|-------------------------|--------------------------------|
| 건축 부문 설계 기준 | 단열조치 준수(가목) | 적용 | 단열조치 준수 |
| |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 적용 |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 준수 |
| | 방습층 설치(다목) | 적용 | 기밀 및 결로방지 조치 준수 |
| 기계 부문 설계 기준 |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적용 |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
| |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 적용 |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
| | 고효율 가정용 보일러(다목) | 적용 | 환경표지 인증 또는 인증기준 적합한 가정용 보일러 사용 |
| | 고효율 전동기(라목) | 적용 | 고효율 인증 또는 최저소비효율 만족 전동기 사용 |
| | 고효율 난방, 급탕, 급수펌프(마목) | 적용 | 고효율 인증 또는 KS규격 기준 이상 제품 사용 |
| |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 적용 | 절수형 설비 설치 |
| 전기 부문 설계 기준 |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 적용 | 각 실별 온도조절장치 설치 |
| |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 적용 | 수변전설비 설치 |
| | 간선 및 동력장비 설치(나목) | 적용 |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
| | 조명설치(다목) | 적용 | 조명설비 설치 |
|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 적용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 적용 | 단지 내 공용화장실 자동 점멸 스위치 설치 | |

■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급한 인증서를 표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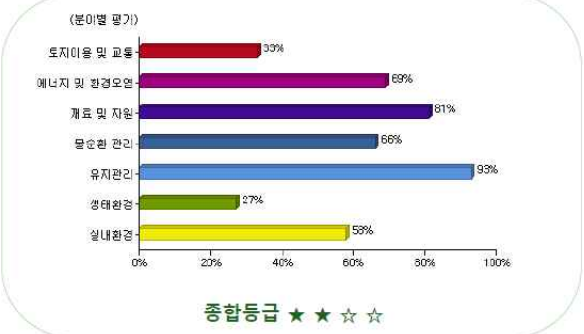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 건축물 개요 | 인증 개요 |
|---|---|
| 건축물 명 : 대전 도안2-2지구 SA6BL 공동주택 신축공사 주 소 : (주)유도개발 2차 준공 (예정) 일 : 2026.12.01.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동 46-3번지 외 78필지 층 수 : 지하2층, 지상34층 연면적 : 207,670.6644㎡ (평가연면적: 206,931.0104㎡) 건축물 용도 : 공동주택 실 계 자 : (주)종합건축사사무소동일건축 | 인증번호 : G-SEED-P-2024-0432-5 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 유효기간 : 2024.05.16. - 사용승인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날 |
| 인증 등급 인증등급 : 우형(그린3등급)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3-329호, 환경부고시 제 2023-172호, 인증기준 운영서(2023.07.01.)) | |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우형(그린3등급)) 건축물로 인증획득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5월 16일

한 국 부 동 산 원 장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변경 후에도 본인증을 받아야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에너지등급 인증서

공동주택에너지등급 인증서

- 공동주택명 : 대전 도안2-2지구 SA6BL 공동주택 신축공사
- 신 계 자 : (주)유도개발 2차
- 대 지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동 46-3번지 외 78필지
- 성 능 등 급

| 가. 소용 관련 등급 | | 다. 환경 관련 등급(제출) | |
|------------------------------------|------|--------------------------|------|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1. 생활용기를 차단기능 | ★ | 18. 열수행 기기 사용 | ★★ |
| 2. 생활용기를 차단기능 | ★ | 19. 풍 사용량 모니터링 | ★★ |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 | 20. 연결된 녹지율 조성 | - |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 소음도 | ★ | 21. 자연기반 녹지율 | ★ |
| 5. 화상실 담배수 소음 | ★★ | 22. 생활면적률 | ★ |
| 나. 구조 관련 등급 | | 라. 생활 환경 등급 | |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1. 내구성 | ★★ | 1. 단기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 |
| 2. 가법성 | ★★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 |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 | 3. 자진거주자율 및 자진거주도로 허용성 | ★★★★ |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 | 4. 생활권시설의 접근성 | ★ |
| 다. 환경 관련 등급 | | 라. 생활 환경 등급 | |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1. 기본계획의 고품격적 가치 | - | 1. 단기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 |
| 2. 과도한 계획밀도 저감 | -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 |
| 3. 도시사 질도, 생태면적(생태기, 녹지)을 한 일) 최소화 | - | 3. 자진거주자율 및 자진거주도로 허용성 | ★★★★ |
| 4. 밀집된 건설방식 채택의 적당성 | - | 4. 생활권시설의 접근성 | ★ |
| 5. 에너지 성능 | ★★★★ | 5. 건설환경의 환경관리 계획 | ★★★★ |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최적화한 설계 | ★★ | 6. 통행 속지관리 문서 및 대우일 제공 | ★★★★ |
| 7. 인-경솔러지 이용 | ★ | 7. 사용자 대응일 제공 | ★★★★ |
| 8. 에너지 모니터링 및 최적화한 설계 | ★★ | 8. 녹지인식인증 관련 정보제공 | ★★ |
| 9. 소관용 보류용 위한 특정용도의 사용 금지 | ★★ | 9. 단원대대의 사회적 약자대리 | ★★ |
| 10. 환경성능연 계통(EFD)의 사용 | ★★★ | 10. 공동공간의 사회적 약자대리 | ★★ |
| 11. 적당소 가개의 사용 | ★★★★ | 11. 계획지치 줄러 및 시설안전의 조성수준 | ★ |
| 12. 자원순환 자개의 사용 | ★★★★ | 12. 세대 내 일로 확보율 | ★ |
| 13. 휴대전화 자개 사용 | ★★★★ | 13. 홀대브릭 및 스타트룸 | ★ |
| 14. 녹색건축자개의 적용 비율 | ★★ | 14. 방범안전 콘센트 | ★ |
| 15. 생활용기 차단기능의 보완시설 설치 | ★★★★ | 15. 주차공간 추가 확보 | ★★ |
| 16. 벽돌관리 | ★★ | 다. 화재·소방 관련 등급 | |
| 17. 벽돌 및 옥출기하수 이용 | ★★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에너지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5월 16일

한 국 부 동 산 원 장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건축물 개요 | | 인증 개요 | |
|--|---|----------------------------|--|
| 건축물명 : 도안2-2지구 SA6BL 공동주택 신축공사 준공연도 : 2026.12.01.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동 45-3 층 수 : 지하2층 / 지상34층 연면적 : 207,671.2814㎡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주)종합건축사사무소동일건축 | 인증번호 : 24-주-제-14-0061 발급자 : 국토부 인증기준 : 한국건축에너지기술원 유효기간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감사 완료일 | | |
| 인증 등급 인증등급 : 1등급 | | 인증 등급 인증등급 : 1등급 |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 요구량 | 1차 에너지소비량 (kWh/㎡·년) | 등급 |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년) | 배출량 |
|------------------------|-----|---------------------|----|------------------------------------|------|
| 에너지 저소비량 건축설계 | | 69.4 | 1+ | CO ₂ 48 | 63.7 |
| 에너지 저소비량 건축실제 | | | | CO ₂ 48 | |
| 에너지 저소비량 건축실제 | | | | CO ₂ 48 | |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 구분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 1차 에너지소비량(kWh/㎡·년) |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년) |
|----|------------------------|------------------------|--------------------|------------------------------------|
| 냉방 | 0.0 | 0.0 | 0.0 | 0.0 |
| 난방 | 29.6 | 55.1 | 42.5 | 11.4 |
| 급탕 | 30.7 | 34.3 | 25.4 | 7.0 |
| 조명 | 9.1 | 7.8 | 21.5 | 3.7 |
| 환기 | | 3.3 | 9.1 | 1.6 |
| 합계 | 69.4 | 100.5 | 98.5 | 23.7 |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건축물이 냉방, 난방, 조명, 급탕 등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소비량에 연료의 재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₂ 배출량 에너지 소비량에서 산출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위 건물은 냉방설비()설치여부 [Y]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입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변경 후에도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비량은 총도 용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건축물로 인증획득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4월 23일

한 국 부 동 산 원 장



■ 보증관련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보증서 번호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
| 제01292024-101-0004100호 | 490,952,537,600원 |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등분사용검사 포함)까지 |

○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금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금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 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 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려지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분양자(매도인)는 분양계약 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 상세 내용은 보증회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 바랍니다. (1566-9009)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VAT별도)

| 보증서 번호 | 건축감리 | 전력시설물감리 | 소방감리 | 정보통신감리 |
|--------|---------------------------|-----------------|-------------|--------------|
| 회사명 | 주식회사 천일건축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여명기술단 | 주식회사 천아엔지니어링 |
| 금액 | 4,613,011,000 | 767,795,454 | 961,577,270 | 304,000,000 |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 구분 | 사업주체 | | 시공사 |
|--------|--|--|-----------------------|
| | 시행수탁사 | 시행위탁사 | |
| 상호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 주식회사 유토개발2차 | 현대건설 주식회사 |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일로 95, 402호 (봉명동, 가온빌딩)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계동) |
| 법인등록번호 | 110111-1714818 | 160111-0474918 | 110111-0007909 |

■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특약사항

- 본 공급물건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사인 (주)유토개발2차, 시행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 간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① 본 공급계약에서 시행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은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한도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본 공급계약으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시행위탁사 겸 수익자인 (주)유토개발2차가 부담하고 있음을 인지합니다.
 - ② 본 공급물건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 바, 위탁사 겸 수익자인 (주)유토개발2차와 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 간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되는 경우(개별 수분양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 포함), 본 사업상 시행자의 지위에 기한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위탁사 겸 수익자인 (주)유토개발2차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이에 따라 수탁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공급계약서 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위탁사 겸 수익자인 (주)유토개발2차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 ③ 분양계약자는 본 분양물건이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하자보수와 관련된 모든 책임이 위탁사 겸 수익자인 (주)유토개발2차와 시공사인 현대건설(주)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④ 본 분양물건은 도안2-2지구 도시개발사업 중 A구역 내 공동주택(SA1BL, SA2BL, SA3BL, SA4BL, SA5BL)을 신축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단일하게 체결된 신탁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것으로, 신탁계약의 목적달성 및 공동주택(SA1BL, SA2BL, SA3BL, SA4BL, SA5BL)의 사용승인을 위하여 공동주택(SA1BL, SA2BL, SA3BL, SA4BL, SA5BL)의 분양대금은 단지별 구분 없이 도시개발사업 및 공동주택(SA1BL, SA2BL, SA3BL, SA4BL, SA5BL)의 토지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또는 그 밖의 부대사업비와 이와 관련한 PF대출금 상환 등 해당 분양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⑤ 본 공급계약상 내용 외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 ⑥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안내

| | | | | | | | |
|-----------------------|---|-------------------------------|-------------------------------|-------------------------------|----------------|-------------------------------|-------------------------------|
| | 견본주택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1557번지 | | | | | |
| | 운영기간 | 2024년 7월 19일부터~ 분양완료시 까지 | | | | | |
| | 운영시간 | 오전 10:00 ~ 오후 18:00 | | | | | |
| | 분양문의 | ☎ 1551 - 5329 | | | | | |
| | 주요일정 | 특별공급 | 1순위 | 2순위 | 당첨자발표 | 서류접수기간 | 계약기간 |
| | | 2024.07.22.(월) 09:00~17:30 | 2024.07.23.(화) 09:00~17:30 | 2024.07.24.(수) 09:00~17:30 | 2024.07.30.(화) | 2024.08.01.(목)~2024.08.10.(토) | 2024.08.12.(월)~2024.08.16.(금) |
| 사이버 견본주택 (공식 홈페이지) | https://hillstate.co.kr/s/doan_riverpark | | | | | | |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련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